

百世葆重 一



[해제]

상소문上疏文, 헌의문獻議文 등 송강 정철의 친서를 모아 엮은 유목집임. 총 5책

[목차]

百世葆重一

觀察湖南

夫守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

承政院

承政院 開拆

此是獻議 而未知的在何時姑附于此

此似是辛卯被竄時供辭故附于癸未疏下

[원문]

百世葆重一

觀察湖南

附癸未疏草辛卯供辭

辭全羅監司疏

臣伏以 使臣之務 唯在乎宣上德而達下情 苟但以宣布
教條爲能盡職 而不急於蘇殘祛弊 子惠困窮 則
治化何時而可行 邦本何得而自固乎 臣之愚 自分
無用於世 自度非才所堪 故當初固已再辭乞免
殿下優容試可 更加獎諭 委寄重藩 臣受命
兢惕黽勉就道 惟不克報效 是憂悉竭疲鈍
無一分實惠及於人者 至是巡歷刁遍即探察既多
則州縣之積弊 軍民之痼病 昔固耳聞而今焉
目瞿 昔固口語而今焉心怵 盖所見益切 則所
感益深矣 臣未知 殿下深居軫念 亦如臣之今
日乎 而況風俗壞敗 人心偷薄 詞訟之間 悖常
干紀者 十常八九 臣每語決遣之際 僂然哽惻 私
自語曰 以如今主張教化之日 而無復人理至於此
極何也 旣而思其故 則以如是憔悴窮蹙之民
而責以人理 吁 亦難矣 於是果知輔保方面 非臣
之比所能爲也 旣叨重寄 狼狽失措 不得已復
出於迂遠之策矣 孟子曰 有恒產
者有恒心 無恒產者無恒心 是故明君制民之產 必使仰足以事父
母 俯足以育妻子 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
之也 輕王者之政 固如是而已焉 有割剝其民而欲
具有恒心乎 我國之民 有恒產者無幾 而常賦
之外 征徭煩重 各色科斂 交迫橫侵 兵役之苦
妨農奪時 閑暇之日 而有同繹騷之時 鎮將
邊吏 苛暴徵索 又有不能堪者 逐致逃丁 逋租
歲率幾何 而荒田之稅 虛薄之責 并萃於見
存之民 抑遏冤鬱 無處伸訴 若此不已 勢將何
若 臣愚以爲一番整理 整在此時 矧茲一路 國家之
府庫 南紀之保障 一向虛疎 國非其國矣 豈不大
可慮哉 臣性執而堅 學迂而固 前日旣嘗 啓稟
則 初不許舉論 而區區螻蟻之誠 自住不得 凡干
弊瘼 創自郡邑 肇於貪污 久爲困循 病民之具者
旣已一切釐革 而其他數在經費事 開沿革者

條款亦多 臣不敢獨任偏見 乃與守令之有識
慮者商議 契勘事畫一以上 萬一聖慈斷
而行之焉 先儒有言曰 天下事 必須變 大變則大
益 小變則小益 大抵更變之事 未見其利而徒有
煩擾之弊者 則固未可輕議 若分明是民冢其
澤而不害於事體者則 殿下亦何憚而不爲
乎 伏願 殿下 留神省察 不爲該司之所阻格
斷然以爲圖回之術 則豈獨爲一方之幸 推而之
他 實國家生靈之幸 臣不勝 此下缺四五字
夫守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
軍節度使○○○伏以臣受
命南○○巡沿海要害地熟察形勢廣詢
民瘼事 ○○○聞更張者不可勝言姑就
其最急最先者言之國家於陰雨綢
繆之策不過曰撫養軍卒軍卒之不得
養而反受其困者其本有在惟兵營摠一方
兵馬 控制列鎮捍衛既重僚率又繁而顧將
士廩料公給無路專倚於軍卒凡百調度誅
求責辦勢有所莫己若舉其大概則除兵
使虞候及所率奴子外 有審藥一人 軍官十
七人 而各奴子二名 騎卜二馬 又營吏五人 合五十
七名 馬三十四匹 料米藟豆 皆配入番之卒 其
代若料米軍 粟米軍 油清軍 黃蠟軍
太軍 豆軍 紙軍 鐵軍 小麥軍 此等
微瑣不可毛舉 創之既久 仍之至今 取
供既出於非理 徵斂自至於無名
雖廉謹守法之將 亦不得不爾 况
本以貪饕爲事者 寧有紀極 一朔元軍 凡三百
七十五名 而荷戈守城者 無一人 間有願戍 亦不
聽留 每當月初按簿差役 冬薪夏耘 捱過
三日分定差備 放使還家 俄而營使 踵至隳突
列邑 憑籍侵督 害及族隣 甚至深山緇髡
窮海漁氓 亦立科目 併恣咀啖 無不以饋 養將
士爲名 惟其自爲 即已如此 故列鎮之狼貪箕
斂 無以檢扼禁約 哀我軍民 受侵於大鎮小
鎮 今年賣牛 明年賣田 膏血即盡 而徵索
無己應辦 末由流徒 殆盡言之 至此良可於
悵 古之良將 與士卒同甘苦 先以恩愛結心

故臨難 倉卒如子衛父 有死而已 今則不然 如家鷄圈豚 割剝以自養 上下心肝 楚越讎敵 緩急之際 責以死長 不亦難乎 今臣巡歷 適此籍兵 目擊各邑氓庶 名編兵水營籍者 如就死地 輒思逃散 其苛擾楚毒之狀 據此可知 此豈獨爲將之過 實繇國家處置失宜 既不能禁 而反教之爲也 仰惟 聖上每遣 巡撫 御史 必詢軍民利病 曰 撫我則 嘉獎之 曰 虐我則 嚴罪之 其愛養士卒 綏固邊圉 可謂至矣 而邊將之割刻依舊 軍民之困瘁日甚 其故何哉 政緣病根不祛 而唯末是圖 不亦僨乎 如欲拔去病根 均惠將卒 則宜先立廩食之規 常有餘而無不足 然後 將無侵暴之弊 卒無供億之費 軍力強而邊圉固矣 議者曰 申飭屯田之政 則足以給軍餉 然本營屯田 結負不敷 荒廢亦多 一年所收 僅支一朔 其可以此補餉士 萬一乎 堂堂國家 闔以外付之主帥 責以摠戎 待以宰相 安有以宰相之重 摠戎之責 而反仰食於軍卒乎 揆之事體亦甚虧損 而况生民彫承政院

⊗⊗齋來事目內 節該各官⊗⊗

⊗⊗守令及僉使萬戶等乙推考⊗⊗

⊗⊗爲先罷黜啓 聞 亦教事日是⊗⊗

⊗⊗度 摘奸後 其中有頃下處 再爲整理爲白乎亦中 珍島郡⊗⊗

⊗⊗弓 一百三十張內 一百三張段 年久欹屈 片片付木 鄉角弓二百⊗⊗

三十八張段 片片付木 年久不用 四十九張段 木弓以代 點交子弓二⊗⊗

木弓一百四十三張段 全數久不修補 狄磨箭段置 除除陳久不⊗⊗

安縣軍器內 黑角弓四百五十一張內 一百五十張段 片片付木 年久⊗⊗

箭九百六十六部十介內 爲半 羽鏃麤惡 不合戰用⊗⊗

柄內 爲半柄刀搖動 不合操用 茂長縣軍器內 上黑角弓⊗

十一張內 一百十四張段 年久片片付木 交子弓一百十四張內 二十七張段⊗

欹屈 間間折縮 長箭狄磨箭并三十九部段 年久不用 片箭⊗

⊗鏃過大 或箭竹過短 鎮上黑角弓 六百六十五張內 五百四十⊗

★交子弓六十六張內 十四張等段 年久不用 蒸米二百石內 六石段★

★點 海南縣軍器內 黑角弓三百六十九張內 一百張段 年久欹★

片付木 其餘爲半 欹屈陳久不用爲白置 海南縣監鄭○★

不職 罪狀兼發 已曾罷黜爲白有臥乎等用良 舉論不冬爲★
珍島 樂安 茂長等官 守令段 依事目罷黜爲良音可★
○到任日月乙 摘奸時相考爲白乎矣 珍島郡守李愨段到★
樂安郡守權遇段 到任僅五朔 茂長縣監李希春段到★
是白乎等 許多久遠不改之物乙 不多月間 勢難卒改弊不喻★
段 初巡時有頃下軍器內 黑角弓八十張 鄉角弓二十六張★
片箭十部等乙 節改備逢點爲白乎旃 李希春段 黑角弓一百★
官時 新造爲白有去等 尤甚不改守令 例以罷黜 似過爲白在果★
當責一日之任事良中 全然勿論 亦涉休歇爲白乎等用良 依他守
令例 遲晚取招爲白乎矣 李愨段 時方在官乙仍于 推考啓 聞爲白★
權遇 李希春段 因他事坐罷爲白有臥乎等用良 推考啓 聞爲
白去乎 今攸司 推考施行教是白齊 南桃浦鎮 軍器諸具 多
疎爲白乎矣 權管尹思恭亦到任僅三朔是如爲白去乙 其中戰
關黑角弓十張 還刀一等乙 爲先改備亦行下爲白有如何乎 于今
弓子一張置 改備不冬 不喻 環刀一介乙沙 舊件以逢點爲白
餘殘浦 至亦皆有新備之物爲白去乙 同浦段 不甚殘弊之
件乙 不爲皆備 頑慢莫甚爲白沙餘良 鎮上糧餉米 十二石
法例無白在 上京移轉船軍糧 以載送是如 稱頃下逢點
所無面的實爲白齊 鉢浦鎮軍器內 黑角弓一百三張內
五十八張內 二十三張 木弓一百六十一張內 四十七張等段 并只年久欹屈
四十一部十五介內 箭鏃 爲半過大 筒兒一百二十八介內爲半屈
改備亦行下爲白乎亦中 權管李舜臣亦至今用意改備
到任已久爲白乎矣 常時鎮中軍器乙 全不修整爲白有如何
來聞奇久遠不用之物乙良 鎮屬水軍逃亡人一族等以介
備貽弊無窮 加于駭怪爲白昆 上項尹思恭李舜臣等
黜爲白遣 同本乙良 各別擇差 催促下送爲白只爲 詮次以
善啓向教是事
萬曆十年六月二十一日
承政院開拆
自古 留有屯田 以備軍需爲白乎矣 我 國段獨無此制
緩急之備 只靠各邑軍資 脫有持久用兵之事 則繼粟尙難
爲白沙餘良 常時營鎮 大小將士糧饌 及戰馬太料乙 皆爲放
軍受用 事甚苟且爲白置 歷代屯田之制段 我國軍力
單弱 傲而行之 其勢極難爲白在果 如得空閑好地 隨宜
收利爲白在如中 不無萬一之補爲白乎去 留心計度爲白乎
矣 康津古尔 土地沃饒 開懇亦易 前矣人家入居多
數 耕作水田則一斗所種 收穫三四餘石 旱田則粟太茂盛 麋
鹿胃不得通行 至如木花茂如叢木是如爲白去等 實是

田品第一地是白齊 縣居民二百餘名 等狀內 同島亦前
 矣 馬場排設爲白有如可 陸地不遠乙仍于 惡虎常常
 出入 嚙食馬疋爲白去乙 同場馬疋乙 興陽地道陽串 移
 放之時 入接人物 并以刷出 至今虛棄折受 耕食爲良
 結陳○○爲白去乙 耕作便不 及出入道路 田畝結數 看審
 打量 圖形牒報 亦碧沙察訪 尹潭 馬島柵管 李將鼎
 等亦中 行下爲白乎亦中 尹潭等所報 同島內 東西二十里
 許 南北三十里許 皆是海澤及平野之地 以田畝可耕之處 一所見
 無窮爲在果 大概 平野田三百二十餘結 畝一百二十餘結
 海澤畝一百三十餘石落只是旡 出入水路段 自馬島鎮相距三
 里許 自加里浦相距五里許是如 諜報爲白有齊 同島乙
 必是海島是如 人物禁耕爲白在果 同處坐地 看審爲白乎
 矣 西北段 內地密邇諸鎮回包 東南段 島嶼羅列 候望連續
 實與內地無異爲白去乙 虛棄不治 鞠爲草場 誠爲○○
 爲白置 民情願耕 急於飢渴 折給收稅 未爲無益爲
 白在果 道內之議 以謂此地膏腴 通國所無 若許民○○
 則必歸於權貴之家 豪右之輩是如爲白臥乎所 其○○
 然爲白去等 許民耕食 未必爲公家之利是白齊 臣○○
 計段 概○○地爲公家之物 打量田畝 可作之處 通知結負 元
 數分作○○ 擇其中一處 連伏好地 一分爲公田 其餘分爲私田
 從民所願 依九一之制 受私田一結則 治公田十二負五束 受私
 田二結 則治公田二十五負 受私田三結則 治公田三十七負五束
 受私田四結五結以上者 亦皆准計加治爲白乎矣 人力多者加
 受而加治 人力小者減受而減治 大約一家所受 多不過五結
 使人人均受易治 但借其力 助耕公田 不復稅 其稅田乙亦
 如周家井地之法爲白乎矣 合八家爲一統 每統擇年長
 謹實者二人 立統長 凡治田耕耘收穫之事乙 專掌拾舉
 率皆先公而後私 其中懶治公田 花利不實者乙良 立條
 用罰 甚者易治爲白乎旡 本官守令乙用良 兼監農官
 檢察耕耘之事 秋收段 令本官爲之爲白乎第亦中
 必多○○農戶偷竊官穀之弊 輪定遠邑剛明官一員
 俾監收穫之事爲白遣 馬島鎮內別立倉庫 蓄積其中
 一以爲營鎮將士 支供之料 一以爲萬一軍興所需之儲爲白
 在如中 可爲長遠之利爲白去乎 妄料爲白齊 同島田畝
 可耕之處乙 本縣居民言內 一千餘石落只是如云云旡不
 喻 節大凡斟酌打量之數 以置幾至六百結是白去等 每
 結二三十斗落只式 都計幾至八九百石落只良中 一石所
 種 可收三十餘石 九取其一爲白良置 一年所收 可得三千

餘石券不喻 一結所出乙 校以歲中 畧數作計爲白良置
二倍於九結上上之稅爲白去等 其爲公私兩益 皎然無疑
爲白昆 言或可採是白去等 令攸司十分磨度施行爲白乎
矣 田畝結數 及坐地圖形段 該曹良中 粘付移文爲白齊 順天
防踏鎮土兵等狀內 突山島伏在 國屯田六十餘石落只庫乙
前矣左水營屬 各鎮浦水陸軍士等 以抄發耕作 石堡倉
入上 補軍資爲如乎 同水陸軍等亦 農役苦重 悶望○○
如爲 珍島內居土兵百餘戶段置 無田畝乙仍于 同屯畝
作資○○爲良結 各相情願以本道監司啓
聞 下該曹從願 并作亦行移後 經筵官所 啓以還爲○○
果 同處牧子干等亦 過半潛隱耕食爲去等 別無○
之意 同屯畝乙 如前耕作 一半乙良 資生防禦 一半乙良○○
例石堡倉入上 補軍資爲良結 陳訴爲白去乙 臣取見
其時 經筵官所啓爲白乎矣 倭人寇全羅道者由
于突山島是如爲白在果 此島在全羅慶尙兩海之間
全羅 蛇渡 呂島 慶尙 彌助項 平山浦 左右相狹券不
喻 同道東南一邊良中 防踏鎮排設爲白有去等 倭
人由此島寇全羅云者 必是誤聞 以啓爲白有於 近處
居民 海中一息之程 乘船入耕爲難是如爲白有在果 同
島亦自左水營出入之津 廣不滿一馬場爲白去等 入耕爲
難之語 此亦不知 啓達爲白有齊 雖曰 船材培養處而
此島 則今不在禁止之類 雖曰 牧場放馬處而此畝 則初不
在禁耕之內 只以害及於民是如 禁革還陳爲白有臥乎
所 今如邊地虛疎 軍糧匱乏之時 從民自願 許令并作 以
實土兵 以補軍資 允爲便利爲白乎於 在前年一邊所
出 不下八白餘石是如爲白昆 同所出乙良 收儲別置 左道
營鎮 將士耕食以支給爲白遣 永革放軍代價受食之
弊爲白在如中 加于事體合當爲白置 并以商量施行何如 詮次以
善啓向教是事
承政院開拆
臣矣 齋來受
教事日內 節該檢勅邊備 兼以問民疾苦 亦教○○○
傳是白乎等用良 臣巡歷道內諮訪軍民弊 條○○
聞爲白置 我國諸色軍士中最苦水軍之役 而○○
之中 唯此道其役尤苦 每年濟州援兵船格軍 及○
京畿黃海等道 移轉船格軍之役段 慶尙道水軍○
所無之役 濟州援兵船格軍之役段 忠清道水軍所無
之役券不喻 本道諸島 伏兵搜討之處 倍多乙仍于○

下海 防戍之苦 視他道尤甚 以此流亡絕戶什居四
 一族切隣 轉相被侵 若不別加撫恤 無以保存守邊
 非細慮是白齊 其矣一應身役以乎爲白在果 身役外水
 營納進上方物所用價重之物 是乃依兵營例 各官田
 結以分定爲白去乃 風高後除防所納代糧米 戰船補用
 布 救荒鹽等物乙 量數除出方物價 本以移定貿納 以除
 其弊何如 濟州援兵船格軍乙 每年三月初入送爲白良在
 等 濟州牧官亦 年例進上馬載送次 以拘留不送爲白有如
 可 馬匹整齊後 六月間良中沙 載送乙仍于 四五朔留待之
 時 諸處乞食 艱難莫甚 勞不喻 及還其家 耕耘過時
 因此失業 竟至流離 極爲矜悶 今後乙良 濟州三邑乙用
 良 進上馬載送船格乙 他條以措置 調發爲白去乃 調
 發無路爲白去等 同馬匹乙 正二月內 全數整齊爲白有如
 可 援兵船入去即時 載送爲白在如中 無久留怨苦之弊
 爲白齊 京畿等處 移轉船格軍乙 一時水使政令不一 或
 有除防抄送之處 或有不爲除防 同戶人以代立之處爲
 白去等 格軍等亦 上京糧物乙既收於同戶 而又使同戶人
 疊爲立番 冤若莫甚 今後移轉船格軍乙良 除番沙
 定 俾無疊役之怨何如 各鎮浦屬鼻巨船及漕運
 兵船等乙 乙卯年變生後 戰船改造爲白遣 并只革除爲
 白有乎矣 同船什物 草芑 三甲索 條索等物乙 會計減
 錄不冬乙仍于 水軍等年年改備充上 其弊不貲爲白昆 時
 用船什物外 已曾減下船什物乙良 命水使 數爻相考 啓
 聞後 會計減錄 以除一弊何如 水營段 非如有倉穀各
 官之類是白去乙 每年司僕寺分養馬五六匹式 分送乙仍
 于 喂養粥米太 皆出於水軍勞不喻 五六馬還納之際
 作紙木綿五六匹 三丁價木綿二十餘匹 及馬粧諸具乙 水
 軍等收合上納 怨苦莫甚 今後分養馬乙良 營門分送
 安徐 以除其弊何如 各鎮浦入防水軍等 各有本浦軍
 器修補 戰船改造之事 及諸般身役爲白去乙 水營亦一
 應軍器所用雜物 至亦等牌差定 公然督納 數小各浦
 軍卒疊~被侵 至爲未便爲白昆 今後各別嚴明禁斷
 以除其弊何如
 群山 法聖兩浦萬戶乙 每年田稅漕轉差使員式爲差
 定 上京往還之間 幾至三四朔 其間例以水營軍官假
 將差送 同假將段 一鎮防備之事 全不顧念 唯以計朔 放
 軍受債利己爲急務乙仍于 兩浦鎮中諸事 尤甚虛疎 軍
 卒亦被橫侵 悶望爲白昆 今後漕轉差使員乙良 依忠

清道牙山倉例 傍近各浦僉使萬戶以輪回差定 以除其
 弊何如
 水軍段 勿論戶保 輪回立防乙仍于 逃亡人一族切隣至亦 各
 其番次都目成送爲白乎矣 各官亦同都目乙 預先磨鍊
 不冬 入防臨時 遽急成送 元軍段 自知番次 及期入歸爲白在
 果 一族代送人段 趁時間知不得 未及入防爲白良在等 各鎮
 浦亦闕防是如 移文本官 囚妻子督送之際 本官色吏及本
 浦差使等亦中 受弊多端 怨苦莫甚 今後流亡絕戶 一族
 入番人乙良 各官守令 親疎分揀 預先親執磨鍊 一~知委
 使無闕防 被侵之怨何如 自乙卯年以後 各處烽燧良中
 充軍六名外 品官一人 監考二人式別定 分二番 檢舉候
 望亦 定規爲白有在果 各官亦 或以老除人 或以下番軍
 士 或以軍保人等 抄定入番 同人等亦身役外 別例事良
 中 自備裹糧 一朔十五日長在烽所 怨苦莫甚爲白置
 當初品官監考別立事段 檢舉烽卒 使之不廢看望本
 意是白去乙 各官亦 牽制私情 實品官乙良 抄定不冬 迷劣
 年老人及有役人等以 不實充定 有弊無益 至爲未便 今
 後各別申明 年老人及有役人乙良 一切抄定安徐爲白
 乎矣 充軍六名 以其於候望 不爲不足爲白昆 別品官
 監考乙良 每朔三名式 分二番除良 每朔二名式 分三番
 相遠立番 以歇其役 使無怨苦 謀避之弊爲白乎旃 左道
 各鎮浦 及右道珍島郡段 烽燧別將乙 入番軍卒以分
 定檢舉爲白昆 他餘有鎮軍各處乙良 置烽燧處多
 寡 分別品官監考乙 入番軍卒果 相參分定 俾無偏
 苦之患何如 梨津浦入防臨陂三番騎兵等段 自初
 梨津元防軍士不喻 甲戌年軍籍時 靈光郡梨津
 浦入防三番騎兵八戶乙 絕戶以臨陂縣移定後 前防處
 是如 梨津浦以仍爲分防爲白有臥乎等用良 相距七日
 莫甚爲白置 大抵內地軍士段 無本土防戍之處 各以附近
 分定入防爲乎事是白在果 沿海有防禦處士兵段 各以其
 地 分屬立防爲白良沙 常時無贏糧 遠戍之弊 軍戶蘇實
 弊不喻 脫有事變 父母妻子在於是 家財田畝在於是 無
 不盡心 竭力效死赴敵 必期勝捷 其於國家防禦之策 其
 利極大爲白去乙 他餘沿海以乎新反最只關防最緊之地
 久遠本土分防軍士至亦 紛紜移送地處 內地他官軍卒
 以代充 立防實非良 ∞ 是白昆學陽地 ∞ 土乙良依 ∞ 遠前
 規本縣五鎮良中 還爲移定何如 於蘭浦入番水陸軍
 全數連名等狀內 本鎮亦在大洋之際 南有高島 西有高山

若有賊來先登 則鎮城之內乙 昭然俯見 凡軍卒多寡 器械
虛實 無不灼知 叱分不喻 鎮中無井 城外只有淺井二庫 暫旱
則水絕乙 仍于 常時大小賓客 到鎮之時 汲水於十里之外 艱
難支供爲白去等 萬一賊來 犯鎮爲在如中 許多軍卒 渴死
丁寧爲沙餘良 陸路出入 只有一項 海水左右相衝 仍爲穿破
人不得通行 不得已積石出路 廣不滿一把爲白去等 萬一賊來
圍城則 援兵入來無路 坐待陷沒 誠非細慮是白乎旃 常時戰
船藏泊處段 四面受風沙石之地 以大風一吹 一日之間 船隻盡
數破碎 年~改造之時 軍多受弊爲白置 乙卯年倭賊大至 守
鎮無策 棄船避亂 因爲陷鎮爲有去等 本浦亦不合作鎮之事
乙 人皆達知爲白齊 本浦之東 隔江相望處 葛頭稱名思卽浦
段 山連木茂 疊石巨川之處 以通望大洋 天作鎮形乙仍于
乙卯年陷城後 同處移設爲良結 都巡察使前呈狀 將爲移
鎮次 其時水使崔浩亦 獨不聽從 至今移鎮不得 各各悶望是
如爲白去乙 臣詳察形勢爲白乎矣 其爲不合立鎮 果如軍人所
訴爲白置 乙卯年敗沒 古達島基址乙 臣歷見爲白乎矣 山
高俯鎮 陸有一路 與此鎮勢大概相同 他日脫有意外之
變 則後車之戒 此爲前轍是白昆 同鎮設便否乙 令本
道監兵水使 十分詳審 參酌啓聞 定奪何如 各道兵水
使等亦 營門用度不足爲在如中 分送軍官於所屬鎮浦 名
之曰助防將 供億之物乙 責出於入防軍士 勞不喻 奴糧馬料
之外 又有放軍受布之事 其弊不貲 窮殘軍卒 被侵多路 至爲
猥濫乙仍于 臣移文禁止 使不得定送爲白在果
朝廷以各別立條禁勅 以除軍卒之弊何如
鮑作干段 慣熟操舟 通知海路 緩急之用莫良於此爲白乎
矣 居無定業 以船爲家 唯視物產之有無 土主之撫虐以爲
去就爲白去乙 自癸酉年 營門及各官浦分定之後 所管各
處亦 認爲己物 唯意操縱 使不得安接 無去處逃亡者因此
甚衆 至爲駭愕爲白昆 今後乙良 永定各處除良 沿海所居
鮑作干等乙 每年推刷成案 知其元數 平時則勿爲侵勞 使
之任便 漁採資生爲白如可 有事變則各以附近處 分定乘
船爲白乎矣 監司巡行時及
御史摘奸時 成冊相考 小名點考 如有逃亡之人爲白去等 所掌鎮
將守令等乙 這~永罰 毋得常時侵虐 使之各得安接何如 一族
之役 爲當今巨弊 軍民之不得保存 皆出於此弊是白置 諸
色軍戶段 各有立役之處 一族充立 必于冤悶爲白良置 所不
得已是白在果 各官亦 逃亡鄉吏 官屬 官奴婢身役至亦 侵責
於正軍 疊~受弊 其苦莫甚 極爲不當爲白昆 各別嚴立科

條 一切禁斷何如 各官元防別侍衛甲士等祿布乙 例爲
 慶尙道卜定 題給乙仍于 同人等亦 一年內其矣三朔當番 及
 濟州別赴防 五朔入防往還時 一身無暇券不喻 遠路
 他道良中 進去受來不得 京中買祿牟利人亦中 僅俸什
 一之價 各~悶望是如 同祿俸乙 本道以受出爲良結 群聚白
 活爲白昆 令該曹商量施行何如
 軍器內紙甲亦 造備多弊 戰用不關之由乙 人多陳
 達爲白良置 朝廷尙不依從爲白臥乎所 必有所見爲白在
 果 道內各官紙甲元數 多至四千三百三十餘部 以大如全州
 府則幾至六百部 小如珍山 龍潭 亦不下二十餘部 一部之
 價 例捧正木一匹是如爲白去等 一番造備 其價極多爲白沙
 餘良 疊紙粘造虫蠹自生 一經夏節 破落不用 年年改備 其
 弊無窮爲白置 兵營 長興 康津等處 乙卯年焚蕩後 軍
 器改備之時 紙甲段 全數不造 皆以掩心改備 充上爲白有臥
 乎所 紙甲無用之實乙 其時 朝廷必爲詳知 磨度改造
 掩心 以補紙甲之數爲白有齊 必于自古傳來之物乙 一時全
 革不得爲白乎喻良郎置 量數減除 代造掩心 以除各邑無窮之
 弊何如 加里浦城底居士兵百餘人 呈狀白活內 本鎮亦自
 去壬午年設立後 城外五里內田畝乙 各~起耕資生爲如乎
 甲子年分 康津縣監崔霽雲亦 其時僉使梁思哲果 有宿
 憾之事 謀欲陷害 民田近處 茅草燒火事乙 莞島黃腸
 木所在處燒火樣以報使啓 聞 其處民家撤出田畝禁
 耕乙仍于 矣徒城內居民至亦 片土置起耕蒙利不得 漸次
 流散 將爲空鎮 已曾禁耕處段 無復可望是在果 自鎮
 城底凡津浦 以大大頭至二馬場量 每年衝火陳荒之處是乃 起
 耕資生爲良結 陳訴爲白置 同加里浦亦 賊路初程 絕島孤城 以
 必于有入防軍卒爲白良置 士兵充實爲白良沙 防禦無患爲
 白去乙 莞島松木培養處是如 一切禁耕 人無生活之利 日就
 彫耗 誠如士兵等所訴爲白昆 凡津浦近處賊船看望事 以
 年~充火 無草木陳棄之地是乃 折給耕食以實防禦何如
 珍島郡 智歷山場牧內 撤家民人五十餘名 呈狀白活內 矣徒祖上始
 叱馬場 未排設前 起耕田畝亦 天順癸未 弘治丙辰 嘉靖乙酉
 等年量田時 正案現付 桓久耕食爲如可 乙未年分點馬所
 啓 以始爲禁陳爲有去乙 辛亥 癸丑等年 許民耕食承
 傳導良戶曹亦 還爲耕食亦爲有去乙 乙卯年爲始各其祖上
 田畝推尋 累年耕食爲如乎 壬戌年分點馬閱德鳳亦 不分
 元田全數陳禁 居民男女 并一千七百九十餘名乙 撤家黜送後
 至今耕食不得 流離丐乞 冤悶莫甚爲良尔 依

祖宗朝 各年許民耕食承傳 案付元田乙良 依舊耕食爲
 良結 渴望陳訴爲白置 郡亦海中絕島 以壤地褊小
 山多野窄 農土極貴 居民生理 實無所賴爲白去乙 智
 歷山牧場亦 在郡西隅 四面周回 幾至百餘里 平原曠野全
 數禁棄豈不喻 海澤可耕之地至亦 人不得耕食 使父祖
 相傳 土着安居之民 破家失業流離四方 其爲寃痛 庸有紀極
 此地與西南海賊程 草島 牛耳 黑山等島 相望切近之地 以賊
 船易犯乙仍于 馬場內加帖申良中 定軍守護盡夜候望
 爲白去等 撤家黜民 以虛其地 實非固邊之策是白乎旆
 場內之地極爲廣闊 必于已會案付田番乙 如舊許民耕食爲白
 良置 餘外水草豐饒空曠之地 百倍於起耕之處爲白去等
 一邊居民 一邊牧馬 兩不相妨爲白齊 以貴人賤畜之義言之 寧
 廢一牧場 以保民生 此亦王政之所當爲者是白去等 况旆民生得安
 馬政無闕 兼之以防禦完固之事乙 國家勿疑施行 允爲便益
 爲白昆 令該司商量處分何如 興陽道陽場 撤家民人段置
 高曾世業 帳付元田乙 還爲耕食爲良結亦爲 訴悶爲白置 同田番
 許民耕食便當事理乙 前矣本道監司 已會詳細摘姦啓 悶豈
 不喻 至如言官又爲論 啓其曲折乙 天鑑已照 臣不復瀆
 陳首末爲白在果 臣段置巡審鹿島時 歷見場內爲白乎亦中
 周回廣濶 極目瀰漫雖養千億馬群 不患地窄豈不喻 牧
 子干等亦 多率法外率丁 前日起耕之處乙 盡數耕作 名爲
 入陳 實則依舊耕墾 本主之通恨切骨 必欲還推 情理實然
 爲白置 此地接近賊路 要衝海傍乙仍于 自古倭奴屢犯此邊
 爲白有去等 驅黜居民 使邊地虛踈 實非得計是白齊 大抵他
 餘牧場段 馬政亦重 輕易許民耕作不得事是白在果 今此道
 陽場及智歷山牧場段 關防極邊之地 以防禦之急 重於馬
 政 不可不變通是白昆 令該司更良參酌 宜民宜馬兩便
 處置 以固邊圉何如 漕軍之役 最若於諸色軍人爲白沙
 餘良 本道左道漕軍段 立役往來之路 相距極遠乙仍于
 加于支當不得爲白乎旆 左道沿海各官田稅段置 輸轉路遠乙
 仍于 法聖倉運納船價 無異於上京船價 同倉入納之時 主人色
 典橫奪之物 倍於京倉入納之事爲白乎等用良 甲戌年分 左道
 民人情願導良 海運判官亦報戶曹 左道沿海各官田稅乙 本
 官守令以監 捧上直輸京倉便否乙 光陽等十官良中 移文訪
 問啓 聞 下該曹爲白有去乙 法聖倉倉底居生牟利人等亦
 漕軍等狀樣以 直輸京倉未便是如 欺罔呈該曹 仍舊
 施行爲白有臥乎等用良 左道沿海居民等亦 依甲戌年公事
 各其本官以捧上漕船除良 賃私船以領格軍豈 漕軍以勘合

都案成送 京倉直納爲良結 數多呈狀爲白昆 同便否乙良 更行
 移訪問施行 以除左道漕卒及稅戶之弊何如 田稅上納時 沿
 海各官加漕軍等乙 正軍 公私賤勿論 元漕軍乙用良 自望充立乙
 仍于 漕軍等亦 任意操縱 多數望呈 百般恐嚇 憑籍受賂 沿海之
 民 不勝其苦 訴悶者甚衆爲白昆 今後乙良 賃軍價布乙 分給各船
 千戶領船等 其等徒乙用良 倉底能槽人 以隨宜冒立 勿令望呈 以
 除居民古無之弊何如 扶安猶島亦 近年以來 青魚稀產乙仍于 所捉
 之船 來到者甚小爲白乎矣 各司稅案段 皆仍舊數 不減其稅爲
 白有臥乎等用良 捉船監考等亦 充數上納不得 雜魚船勿論
 青魚稅案施行 充數上納爲良結 呈戶曹爲良在乙 戶曹亦 雜魚
 船并以青魚稅充數亦 行移是如 海邊漁戶乙 專數成案 督徵其稅
 無根着水業資生之人 旋即逃亡 同船稅乙 恒居一族切隣乙用良
 侵徵上納 怨苦莫甚爲白齊 常時各邑漁船稅案事段 各以所捉
 之魚 監捉差使員 考其行狀 計其船數 成案上送 納稅法例是白
 去乙 節青魚不產之故 散處雜魚船至亦 青魚稅案成送 督令納稅
 爲白臥乎所 不似國家之事 民怨宜然爲白昆 今後乙良 青魚船
 稅乙 差使員乙用良 隨其所捉船數 從實成案 收稅上納爲白遣
 不干雜漁船乙良 一切充數成案安徐 以除海邊居民之弊何如 扶
 安縣沿海民居訴悶內 縣漁船稅案乙 當初恒居有實船券 成
 籍爲乎所不喻 諸處移來 假幕暫居小小漁艇至亦 不辦成
 案爲有臥乎等用良 該曹置簿後 即時逃亡 同船稅乙 不得
 已一族切隣 以分徵上納爲白乎旡 其中無族隣者段 出處無路乙仍
 于 烟戶以分徵 闔境受弊 怨苦莫甚爲良尔 無當身未收漁稅
 是乃 限三四年以前 依己未庚申例 隨宜作米 州倉入上以便徵
 納之路爲良結 情願是白置 漁缸逋稅段 實與未收田租有
 間在所斟酌旡不喻 本縣倉穀可食米一千五百石乙 已曾京
 倉移轉 遺在不敷爲白去等 脫有水旱邊警爲白在如中
 救荒之資 及軍糧段置 不足絃如亦 不可不慮是白昆 令該曹
 商量 依願爲白乎矣 他餘沿海各官段置 不無此弊爲白昆
 并以參酌施行何如 順天府居民等狀內 本府倉穀亦 已
 曾移轉之數 幾至七千餘石是白去乙 今年良中置可食米一千
 五百石乙 京倉移轉亦 卜定爲有臥乎所 本府會計內 可食米元
 數一萬六千餘石以 前年分一千七十餘石乙 黃海道移轉爲遣
 留庫軍糧計除還上分給數一萬三千餘石 以畢捧上爲良置 耗
 數僅一千三百餘石是去乙 移轉米一千五百石 格軍糧米九十餘石
 并一千六百石上納事良中 四百餘石至不足乙仍于 皮穀以作米充
 數爲臥乎所 民生資活之本 日就罄竭 各各悶望旡不喻 本府
 亦 沿海巨邑 將士留鎮之處 以脫有事變 無以支持 同移轉米乙

內地耗穀有餘各官以移卜定爲良結呈狀爲白置順天府亦古稱雄富爲如乎近來以來守宰屢經非人或媚悅勢戶盡減逋租或營私利已濫用無節昔年蓄積今失五分之一許多居民分給不敷券不喻左道沿海唯此府最大且接慶尙右道沿海脫有賊變生於彼此則將士留鎮之處此外無他必須平時多峙軍需以備不虞可謂萬全之策是白去乙屢次移轉以致耗米不足將用元穀實非善計是白昆節京倉移轉米一千五百石乙良道內會計餘數米多在爲白在臨陂縣以移卜定爲白遣同府米乙良勿令上納以儲軍需何如道內各官田稅及貢米上納之時漕船加格軍段每一名價布三匹半式支給爲白乎矣賃私船格軍等價布段各別舉論不冬爲白有臥乎等用良同私船都受價布以船價及沙工衿計除格軍之價僅得米斗民怨莫甚爲白昆令該司更良酌定以除民怨爲白乎矣近年移轉穀物及船格糧料皆出於沿海各官乙仍于軍需耗竭邊備虛疎至爲可慮爲白昆令該司并以商量內地各官穀物有裕處以推移充數以實邊邑何如珍山郡亦太祖大王胎室奉安之處以陞爲郡治爲白良置本來山谷間彈丸附庸之地是白去乙貢賦雜役無異他郡殘小居民不勝其苦乙仍于前矣或因郡民上言或因使臣陳弊蠲除蘇復之命屢此降下爲白有乎矣至今未蒙大段恩澤將至闔境空虛極爲悶望是如爲白昆令該司斟酌可減之物優數蠲免以蘇殘民爲白乎矣禮曹所納進奉上中品擣練紙并十卷狀紙十卷等乙依龍潭縣例減除爲良結亦爲陳訴爲白昆并以商量施行何如和順縣段置道內尤甚殘縣以一應貢賦無異他官民間一結出米之數歲至三十餘斗是如爲白去等民生艱苦乙據此可知是白置貢案付他餘上納之物以乎爲白在果縣樂工二名以殘邑奴婢數小是如一名移減已久爲白去乙節錦山郡樂工一名乙移定爲白有臥乎所縣亦奴婢不足乙仍于樂工奉足乙不得已逃亡奴婢以定給每年糧價乙專責於一族切隣一邑之民無不受弊新定一名是乃他巨邑以還移定爲良結呈訴爲白昆令該司依願施行何如詮次以

善啓向教是事

萬曆十年七月初十日

臣素有脹痞重病百藥無効到今年七月之初轉成胃証飲冷無節對食輒嘔五十餘日僅以糜

粥連命 銷疲骨 立殆不能支爲白乎矣
天恩罔極 黽俛驅策爲白如乎 今月初二日
始叱 下部要處發腫 辛苦未幾 又得內傷外感 頭腹痛甚 四肢
酸急 呻吟轉側 達夜不眠 寒熱往來 精
神昏暗 元氣蕭然 若將漸盡 咫尺之間
動作須人 料臣此病 發於積傷之餘 旬月
之間 差復無期 既不能巡審列邑 又不
能裁決繁務 一日在官 貽一日之弊
極爲惶恐爲白 臣矣職乙 斯速本差
以便公私爲爲只爲 詮次
善啓向教是事
已上皆全羅監司時
此是獻議 而未知的在何時姑附于此
內外梓宮 自有其制 襲斂衣褂
自有其數 蓋國初定制 據禮
而制梓宮 視梓宮而定衣數 今
未可輕議 今茲奉審 大臣重臣
必有審察商度 申稟定
奪 臣不敢妄爲之說
癸未三竄時疏草
此癸未疏草 而附于此頭 籤癸未三竄時疏草七字 似是畸翁筆
癸未三竄時疏草
臣以庸陋無狀 濫陞正卿 聖恩鴻大 天地莫
量 其於朝廷是非 國家得失 豈無一二
報效之誠 欲達天聽者乎 第今東西
之說 臣亦在其指目中 臣雖發至公之言
有似妬婦之難信 故容嘿至此 乃於前
月二十八日 入侍諸大夫之後 恭承上教
慨然 以朝著不請爲憂 首舉二人 次及三人
皆欲置諸流放之典 謀及左右 愚臣妄意
以爲 當初不請之端 雖自二臣 而然別無
顯惡可罪者 而歲月既久 已作筭狗 今
皆補外 不在朝清 窮源極治 恐致紛
擾 請置度外 如左右諸臣之說 於後三
臣 則近日所爲 難逃聖鑑 而其中朴
謹元 壅蔽姦狀 反有甚於許宋二人 神鬼監臨 原情定罪 固
有輕重 然而聖明之下 罰 過其罪
○○舉措失當○○○○過計 將欲

○○疏尊天威 而急遽之際 措辭失次 乃曰不願
深治 而好惡是非 則不可不示云云者 只欲
薄示譴罰 使之自懲而已 入侍翌日 伏聞
成命已下 某配會寧 某配甲山
於人聽聞 殊甚惶駭 唯我 殿下
卽祚以來 未嘗黜一人也 放一人也 仁恩
膏澤 流浹內外 而荆棘之路 一朝
始再 殊非 盛世美事 臣於此始恨
口陳之說 未能搔擢表情 力請寬貸
之典 思陳一疏 願乞天恩
差輕宋應漑許筠之罪 特從未減 含意
連辭 雖未敢卽發
噫 臣豈謂二臣爲無罪 而營救哉
誠欲刑罰得中 使受罪者無憾也 論者徒
持註誤之見 並與其情狀 敗露罪惡彰
著者 而待之以公論 許之以士氣 只以狂妄
激發 爲其罪案 而反以臣爲陰陷之人 不亦
誤乎 臣旣被人詆斥 理難抗顏供職 故
慚懼退縮 陳乞遞免 而 聖慈涵容 終
闕俞音 區區微悃 有難終嘿 茲敢
瀝血 仰瀆聖明 伏願殿下省察
焉 嗚呼 東西之說 實爲亡國之禍胎 醞釀
十年 今始重發 幸賴聖明在上 裁仰鎮
定 不然則己卯士林之禍 復見於今日矣
今若不能善爲處置 則無以剗破禍 胎
就伏人心 而後日之禍 必有十倍於今日者
調和鎮定 以之安國家 保士林 惟在於今日之處
置如何耳 不可不深思長慮 無失此幾會
也 夫兩邊之人 未必能爲君子 亦未必能爲小人
此調和保合之論 所以的中時弊 而無偏無頗
者也
今日朝紳爲時論者 人皆曰邪黨
而 臣獨以爲不然 蓋自有東西之說以來 分
朋角立爲日久矣 於是輕薄浮躁之輩 姦邪
陰賊之徒 聲勢相倚 附會時論 構
捏爲矣 摺摭爲事 吹毛覓疵 無所不至 收拾
道路 不根之言 不問虛實 不擇真鷹 敷
衍增加 變易情節 始之以秋毫 成之以

泰山 聽者不察 萬口雷同 於是
使浮躁者 倡其論 陰賊者 張其鋒 橫行
館閣 騁驚臺院 百僚爲之 波蕩朝廷 爲之
動搖 托正售邪 倚公行私 市名榮身 賭官
潤屋 投之所向 無不如意 自行自止 莫敢誰何
而國政亂矣 國脉病矣 嗚呼 是豈獨夫人之罪哉 用
其人而恣其爲 其勢不得不 至於此也 其中亦不無 士類之有人望者
今日清明士類 或出在外 不無其人而 或出在外
不能主張公論 遂使浮躁陰賊之徒 張其氣焰
恣其計弄 而貪官戀祿之人 疲軟詿誤之輩
莫敢立垂於其間 可勝痛哉 雖然 窺視今日之勢
公私相難 邪正相糅 雖有姦愴誤國之人 而亦有
識見不明 未免詿誤者 參錯於其間 非徒詿誤
之人 不可一一 譴責 雖得罪如官者 亦不可治
之太急也 何者今日朝廷 皆爲時論所染污 雖
名士類 莫有免者 今不少寬其罪 慰彼之心 則窺
恐人懷不安 亦無自新之路 非計之得也 且今
朝廷如久病新瘥之人 惟當節飲食慎起居 潛消
慚化 勿緩勿急 豈可孟浪下手 妄吾計爲以
重傷失元耶 (以此言之 莫如澳發綸音
更加斟酌 差輕二人之罪 只令削黜田里 以慰群情 不亦可乎)
至於博士韓戴 其縱恣無忌之狀 固可罪也 然臣窺聞之 戴之爲人 不過喪
心風病 不比平人已久云 今以無君不道爲罪首服 則斬不待
時自明 則停刑無期 因仍之 則殞命杖下 豈不重傷國體乎 伏願
殿下更加留念其仰 臣伏見近日聖明虛受 ㉠㉠
此似是辛卯被竄時供辭故附于癸未疏下
某以 先王朝出身 於
當代卽位之初 驟從侍臣之後 出入 經幄最久
盧守慎爲校理 臣爲修撰 一日丕顯閣入侍
天顏溫粹 酬酢如響 仁義之言藹然 使人感
動 及其講訖而退 與守慎對公于玉堂
臣不覺有感譖 迸出守慎 亦揮譖語
臣曰 老人多譖 自是常事 修撰亦如是
乎 相與吃吃 無非聖德事 此則丁卯之
冬 戊辰春間也 己巳年間 亦以講官進退 其時
老父病頃重 曠職多時 而身在要路
恩寵日新 撫躬增感 報効無路 每與老父老
母 相對感泣 庚午遭父喪 喪畢之後

天恩益隆 罪朔之間 已躋直提學 未幾而又遭母
喪 以方在講筵 特垂恩賻米菽油清
諸件名物 堆積于家 得以用之於喪葬 至
於周年之後 恩切存歿 感泣是
地 喪畢之後 乙亥之秋 身病益深 理難供職
不得已 謝官南歸 東西角立之勢已權輿 於
此年也 以臣南歸中間 喜事之輩 日爲唱酬
曰 某之言曰 吾豈與金孝元同朝乎 遂決歸南 豈不
已甚乎 臣聞而咲之曰 吾曾
與尹元衡 李樑同朝 而猶不得與金孝元同朝
乎 付之一咲而已 自茲以後 遂矣身推西人
之魁 凡無形不根 陰慘已甚之言 皆歸
於臣身
戊寅 己卯 辛巳 癸未 甲申 乙酉年間 愈
往愈甚 牢不可破 此則專由李潑兄弟與臣
怨隙特甚 日以謀陷臣身爲事業
張皇說家到戶 愉東人之怨 臣深入骨髓
至於此極 無非李潑之爲也

[현대역]

백세보중1

호남을 관찰하다

계미년(1583)의 소초(疏草)와 신묘년(1591)의 공사(供辭)를 부기 한다f1h

전라감사를 사직하는 소

신이 삼가 아뢰옵건대 사신의 임무란 오직 임금의 덕을 널리 베풀고 백성의 형편을 위로 전달하는 것을 힘쓰는데 있습니다. 참으로 단지 임금의 말씀을 널리 퍼 알림으로써 직무를 다하였다라고 하고, 빈곤을 구제하고 폐단을 제거하는 것을 급하게 하지 않은 즉, 임금의 바른 다스림이 어느 때 행해지고 국가의 근본이 어느 때 굳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헤아리건대 세상에 쓸모가 없고, 일을 감당할 기량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완고하게 여러 차례 직임에서 면해주기를 비는 글을 올렸습시다만, 전하께서 어여빠 여기시어 또 중요한 임무를 맡기시니 신이 명을 받아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힘써 나아갈 바를 궁리하오나 오직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여 온힘을 다 써도 사람들에게 혜택을 끼침이 하나도 없을까 이것이 걱정입니다.

이번에 두루두루 돌아다녀 살펴본 바가 많은 즉, 각 고을에 쌓인 폐단과 백성(軍民)의 고통은 옛날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았고, 옛날에는 입으로만 말했지만 지금은 마음으로 느낍니다.

대개 보는 바가 더욱 간절할수록 느끼는 바가 더욱 깊어집니다. 신이 전하의 백성을 생각하는 깊은 뜻을 알지 못하나 또한 신의 지금과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풍속이 무너지고 인심이 경박해져 소송하면서 인륜을 어그러뜨리는

자가 열에 아홉입니다.

신이 늘 판결을 내릴 때 슬픔에 목이 메어 스스로 말하기를 ‘지금 날마다 교화를 주장하는 때에 인간의 도리가 회복되지 않고 이처럼 심하게 된 것은 어째서인가’하였습니다. 대개 그 까닭을 생각해 보면 이 같이 초췌하고 궁색한 백성에게 인간의 도리로 꾸짖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하니 과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는 신이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외람되이 이미 중대한 임무를 위임받았지만 허겁지겁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조치를 잘못하여 부득이 다시 어리석은 계책을 냅니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정한 부(富)가 있는 사람은 변치 않는 마음을 지니고 살고 부(富)가 없는 사람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 한 까닭에 현명한 임금은 백성의 살길을 마련해주어 위로는 부모를 우러러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한 연후 백성을 착한 일을 하도록 이끌므로 백성이 따르게 됩니다. 왕이 정치를 편히 하려면 진실로 이와 같이 할 뿐입니다. 가렴주구를 하면서 그 백성이 착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백성은 어느 정도의 부(富)를 가진 사람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정해진 명목 외의 세금과 부역이 번거롭고 여러 명목의 각종 세금을 거두어 방자히 침탈하며 병역(兵役)의 괴로움은 농사의 시기를 빼앗아 방해하고 한가한 날이라도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때와 다름이 없습니다.

진(鎭)의 장수와 변방의 향리는 가혹하게 거두어들여 마침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게 하기까지에 이르게 하니 세금 떼먹은 것이 한해를 헤아리면 얼마입니까? 황폐한 밭의 세금과 거짓 장부의 책임을 모두 남아있는 백성에게 지워 거두는데 그 억울함을 억눌러 호소할 곳을 없게 하니 이 일을 장차 어찌 하겠습니까? 신이 어리석은 소견으로 한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국가의 창고이며 남쪽의 버팀목입니다. 한번 텅 비게 되면 나라는 이미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어찌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성격은 완고하고 학문은 우활(迂闊)f1h합니다. 전일에 이미 아뢴 바 있으나 처음에는 거

론을 허락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땅벌레 같은 미미한 정성이나마 스스로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무릇 폐단은 군읍(郡邑)을 둘 때부터 탐오(貪汚)에서 시작되어 오랜 세월 이어져 왔는데 백성을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모두 바로잡았으나 이 밖의 여러 가지 경비에 관한 것이나, 만들었다 없앤 규정들도 또한 많습니다. 신이 감히 독단적인 편견에 치우칠 수 없어 식견과 사려가 깊은 수령과 더불어 의논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정리하여 올리니 만에 하나라도 성상(聖上)께서 결단하여 행하십시오. 선유(先儒)께서 말씀하시길 ‘천하의 일은 반드시 변하는데 크게 변화시킨 즉 이익이 크고 작게 변화시킨 즉 이익이 작다’하였습니다. 대저 바꾸어 변화시켰는데 그 이익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번거롭고 소란스러운 폐단만 일으킨다면 이는 참으로 의논을 가벼이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변개(變改)가 백성에게 분명히 혜택 되는 것이 있고 크게 사체(事體)에 해 됨이 없는 일이라면 전하께서는 무엇을 꺼리어 추진하지 않으시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잘 살피시어 해당 관서에서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단호하게 변혁을 도모하신다면 이는 한 지방의 다행으로만 그치지 않고 다른 지방에까지 미쳐 실로 국가의 온 백성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신은 ∞∞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하 4~5자 결락>

[전라도 요해처(要害處)의 폐단사]

∞∞대부 수(守)f1h전라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

삼가 신이 명을 받아 ∞∞연해 요해처를 돌아보고 그 형세를 자세히 살피며, 백성의 고통을 널리 물어 알아낸 바 ∞∞∞ 고쳐야 할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 가장 급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대비할 방책으로 군졸을 어루만져 육성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군졸을 기르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을 받는 근본은 오로지 병영이 한 지방의 병마를 총괄하여 여러 진(鎭)의 방어를 맡는데 막료(幕僚)와 간부(幹部) 만을 중히 여기고 (군사를)번잡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군사의 봉급 주는 것을 살펴보니 관에서 내어줄 길은 없고 오로지 군졸에게 떠맡겨 온갖 세금을 마련케 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지우니 그 형세가 어찌할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그 대강을 예로 들어 보면 병사(兵使),

우후(虞候) 및 거느리는 노예 외에 심약(審藥)f1h 1인, 군관(軍官) 17인에 노비 2인씩과 기마(騎馬)와 짐말 2마리, 또 영리(營吏) 5인 하여 함께 57명, 말 34필의 식량과 말먹이를 모두 입번(入番)f2h하는 군졸에게 맡기니 요미군(料米軍), 속미군(粟米軍), 유청군(油淸軍), 황랍군(黃蠟軍), 태군(太軍), 두군(豆軍), 지군(紙軍) 철군(鐵軍) 소맥군(小麥軍) 등으로 이들 세세한 것은 장황하게 거론할 수도 없습니다. 생겨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바치는 명목이 이치에 맞지 않는데서 나오며 거두어들임이 명목 없음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청렴하고 원칙에 충실한 장수라도 또한 어찌해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탐욕스런 자들이 어찌 그냥 두겠습니까? 한 달의 기본군사가 375명이지만 한 사람도 창을 메고 성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고 간혹 그 중에 수자리 살고자 하는 자가 있더라도 또한 허락을 얻지 못합니다.

매월 해당하는 달 초에 장부를 살펴 역(役)을 매기는데 겨울에는 땔나무를 하고 여름에는 김매도록 시킵니다. 삼일을 넘기면 차비(差備)f1h에 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곧바로 영사(營使)가 뒤쫓아 와서 여러 고을을 소란스럽게 하고 이를 핑계 삼아 수탈을 자행합니다. 그 피해가 이웃과 친척 및 심지어는 깊은 산의 중과 궁벽한 바닷가의 어민에게까지 미쳐 또한 여러 과목을 세워 방자하게 침탈하여 먹

이감으로 삼지 않음이 없습니다. 장사(將士)를 기른다 함은 명목뿐이고 실은 스스로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미 일이 이와 같은 까닭에 모든 진(鎭)이 이리처럼 탐욕을 내어 조세를 가혹하게 받아들이며 멈추고 조절함이 없습니다. 애잔한 우리 군민이 크고 작은 진에서 침착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소를 팔고 내년에는 땅을 팔아 피땀을 다 바쳐도 가혹한 수탈에 대응할 바가 없습니다. 마침내는 떠돌이가 되니 위태로움이 극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바 참으로 근심스러운 바 있습니다.

좋은 장수는 사졸(士卒)들과 더불어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하고 먼저 은혜로써 마음을 맺게 합니다.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지키는 것과 같이 죽음으로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돼지처럼 이를 죽여 스스로를 살찌우니 위아래의 마음이 초(楚)나라와 월(越)나라처럼 서로 원수져서 위급한 때 죽음으로써 책임지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이 돌아다니며 이들 병적(兵籍)에 오른 병졸을 만나보니 각 고을 백성으로 병영과 수영의 장적에 편제되는 것을 죽을 곳에 나아가는 것처럼 여겨 문득 흩어져 도망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괴롭고 힘든 상황을 이로서 가히 알 수 있으니 이를 어찌 오로지 장수만의 과실이라 하겠습니까. 실로 국가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금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니 반성하여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임금께서 늘 순무(巡撫)와 어사를 파견할 때 반드시 군민의 이익과 아픔을 묻고 말씀하시길 “백성을 잘 보살폈다면 그것은 칭찬하고 장려하며, 학정을 한다면 그 죄를 엄히 다스리겠다.”고 하셨다니 그 사졸(士卒)을 아끼고 육성하여 변경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가히 지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방의 장수가 각박함은 여전하고 군민의 곤궁과 초체함은 날로 심해지는데 그 연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사(政事)에 연관된 병(病)의 근원을 떨어내지 않고 오로지 말사(末事)만을 도모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영(營) 인근의 여러 읍을 합쳐 한 부(府)로 삼고 병사(兵使)로서 (수령을) 겸하게 하고 명망 있는 문관(文官)을 판관(判官)으로 삼아 경성(鏡城)의 예와 같이 하면 그 창고의 곡식으로 장수와 군졸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고, 군민 또한 아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이와 같이 한 측 유리한 조건을 점하여 항상 싸움에 이길 수 있고 대비의 형세에 백배의 기운이 더해질 것입니다. 수영(水營)에서 (백성을) 수탈하는 폐단 또한 병영 못지않으나 문제를 푸는 계책을 신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이 글만 읽은 선비로서 이 일의 연혁을 함부로 논함은 신의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의 계책은 신의 독단적인 견해가 아니라 나라 일을 근심하고 일의 요체를 아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제일로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일이 중대함에도 사람들의 성정(性情)이 완고하고 방자하여 감히 쉽게 입 밖에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백성의 살림이 궁벽하다면 성왕(聖王)의 법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임금께서 성인의 어지심으로 (서울에서) 멀고 궁벽한 곳의 도탄에 빠진 백성의 원통을 내려다보시어 통상적인 법규에 구애받지 마시고 특별하게 조치하고 과단성 있게 행하십시오. 특히 임금을 돕는 재상들에게 물어 좋은 쪽으로 처리하시어 적폐(積弊)를 일신하셔서 남쪽 백성의 크게 바라는 마음을 풀어 주신다면 매우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만력 10(선조15, 1582)년 6월

전라도 각 고을의 군기(軍器) 상황 보고]

승정원

가지고 온 사목(事目)내에 이번에 각관의 弓수령 및 첨사(僉使), 만호(萬戶) 등을 추문하여 고찰(高察) 먼저 파직시키고 아뢰라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적발한 후 그중 탈이 난 곳은 다시 정리하되(珍島郡)은(弓) 130장 중에서 103장은 연수가 오래되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굽어 조각 조각 나무를 붙여 대었습니다. 향각궁(鄉角弓) 이백(弓)38장은 조각조각 나무를 대었는데 연도가 오래되어 쓸 수 없는 49장은 목궁(木弓)으로써 대신하였습니다. 교자궁(交子弓) 2(弓)목궁143장은 모두 오랫동안 고쳐 보충하지 않았고 적마전(狄磨箭)도 더러는 오랫동안(安縣)의 군기 안에서 흑각궁(黑角弓) 451장 중 150장은 조각조각 나무를 대었고 년도가 오래되어(화살) 966부10개 중 반은 깃과 살촉이 몹시 좋지 않아 전쟁용으로 적당치 않습니다. 칼자루 중 반은 칼자루가 흔들려 잡고 쓸 수 없습니다. 무장현(茂長縣) 군기 중, 현에서 올린 흑각궁(弓)11장 중 114장은 오래되어 조각조각 나무를 대었고 교자궁(交子弓) 114장 중 27장은 기울고 굽어 사이사이 꺾이고 오그라들었고 장전(長箭)과 적마전(狄磨箭) 아울러 39부는 오래되어 쓸 수 없습니다. 편전(片箭) 살촉이 지나치게 크거나 혹은 화살대가 너무 짧습니다. 진(鎭)에서 올린 흑각궁 665장 중 540(교자궁) 66장 중 14장 등은 오래되어 쓸 수 없습니다. 찔살 200백섬 중 6섬은 (海南縣) 군기 내 흑각궁 369장 중 100장은 오래되어 굽고 조각조각 나무를 대었고 그 나머지 반도 구부러지고 오래되어 쓸 수 없습니다. 해남현감 정(鄭)은 직임을 수행하지 않은 죄상이 아울러 드러나 이미 내쫓으신 바로써 거론을 안(珍島).낙안(樂安).무장(茂長) 등의 수령은 사목에 의거해 내쫓을 만 합니다.도임한 일월을 감사(監查)시 서로 살피시오되 진도군수 이각(李殼)은(낙안)군수 권우(權遇)는 도임한지 겨우 5개월입니다. 무장현감 이희춘(李希春)은(이)거늘 오랫동안 고치지 않은 많은 물건은 짧은 기간에는 모두 고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은) 처음 순시할 때 탈이 난 군기내 흑각궁(黑角弓) 80장, 향각궁(鄉角弓) 26장, 편전(片箭) 10부 등을 이제 고쳐서 점고(點考)를 받게 하옵시며 이희춘은 흑각궁(은)때 새로 만들었는데 (파손이) 매우 심한데도 고치지 않은 수령의 예로서 파직시킴은 자못 지나친 듯 하거니와(은)마땅히 책임져야 할 하루의 임무인데 전혀 논하지 않음은 또한 너무 느슨한 바로써 다른 수령의 예에 의거하여 얼마 후 물어 다스리십시오. 이각(李殼)은 지금 관직에 있는 탓으로 추고(推考)한 후 아뢰옵고, 권우(權遇), 이희춘(李希春)은 다른 일에 연관되어 파직당한 바로써 추고한 후 아뢰오니 해당관청에 추고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십시오.

남도포진(南桃浦鎭)의 군기 및 여러 기구는 많이(은)소홀 하오되 권관(權管)윤사공(尹思恭) 또한 도임한지 겨우 석달이라 하옵거늘 그중 전(戰)흑각궁 10장 환도 한자루 등을 먼저 고쳐 준비하라고 명령 내렸다하므로 오늘(은)궁자(弓子) 1장이라도 고쳐 마련할 뿐 아니라 환도 1개라도 옛것으로서 점고를 받도록 하(은)나머지 쇠잔한 포(浦)에 이르기까지 또 모두 새로 구비한 물건이거늘 남도 포는 잔폐가 심하지 않으니(은)건을 고치지 않아 태만함이 막심할 뿐 아니라 진에서 올리는 군량미 12석(은) 법례가 없는데 서울로 올려 보내는 선군의 식량을 실어 보낸다고 칭하고 빠트린 것을 점고(은)한 바 사실이 들어난 바 없거니와 발포진(鉢浦鎭)의 군기 내에 흑각궁 103장 중에(은)58장 중에 23장, 목궁 161장 중 47장 등은 모두 오래되어 굽고 어긋나 (은) 41부 15개 내 화살촉의 반이 지나치게 크고 통아(筒兒) 128개 중 반은 굽어(은)고치도록 명령을 내리심에 권관(權管) 이순신(李舜臣) 또한 지금 고침에 마음을(은)도임한지 이미 오래되었으되 항상 진중 군기를 모두 정리하지 않았다가(은)와서 아뢰니 오래도록 쓰지 않는 물건들을 진에 속한 수군의 도망자 일족 등이(은)폐를 끼침이 끝없고 더욱 해괴하므로 위에서 본 바 윤사공 이순신 등(은)파직 하옵시고 이 보고문을 각별하게 가려 뽑은(관

리를 시켜) 빨리 내려보내도록 재촉하시라는 까닭으로 아뢰는 일입니다.

만력 10년(1582, 선조 15) 6월 21일.

[군수(軍需) 마련의 대책]

승정원에서 뜯어 볼 것

예로부터모두 둔전(屯田)으로써 군수(軍需)를 대비하도록 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제도가 없습니다.

대비해야 할 것을 모두 각 읍의 군수 물자에 의지할 뿐으로 간혹 오랜 기간 용병(用兵)해야 할 일이 생기면 식량을 계속 조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항상 영진(營鎭)의 장수 및 병졸의 군량과 전마(戰馬)의 먹이를 다 방군(放軍)시키신 대가로 받아쓰니 매우 구차하옵니다. 역대 둔전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군력(軍力)이 매우 미약하므로 이를 모방하여 행함은 지극히 어렵거니와 놓고 있는 좋은 땅을 얻어 편의에 따라서 이익을 거두면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방책을 생각해 보니 강진 고금도(古今島)는 토지가 비옥하고 개간 역시 쉬우니 이전부터 많은 인가가 들어가 살면서 경작한 즉, 수전에는 1두를 심으면 수확은 3~4 섬 여를 넘고 한전(旱田)을 경작하면 조와 콩이 무성하여 고라니와 사슴새끼조차 다니지 못하고, 목화(木花) 잘되는 것이 총목(叢木)이 가득 모인 것 같으니 실로 비옥함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현에 사는 백성 200 여명이 올린 소장에 보면 그 섬에는 전부터 말(馬)목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육지와 멀지 않기 때문에 호랑이가 늘 출입하여 말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목장의 마필을 흥양(興陽)땅 도양곶(道陽串)으로 옮길 때 관련 인물들과 함께 내보내었는데 지금 비어 버려진 땅을 절수(折受) 받아먹고자

진(陳) 하거늘 경작의 편부와 출입 도로, 전답 결수를 조사하여 살펴보고 그림으로 그려 보고하라는 것을 벽사찰방(碧沙察訪) 윤담(尹潭), 마도권관(馬島權管) 이장정(李將鼎) 등에게 명령을 내림에 윤담 등이 보고한 바, 그 섬 안은 동서 20리, 남북 30리로 모두 바닷가 및 평야의 땅으로, 경작할 수 있는 전답이 얼른 보아도 무궁하거니와 대개 평야 밭 320 여결(結), 논 120결, 바닷가의 답 130여 섬지기이며 출입수로(出入水路)는 마도진(馬島鎭)으로부터 거리가 3리, 가리포(加里浦)로부터 5리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이 곳을 바다 가운데 섬이라고 하여 사람들의 경작을 금하였는데 이곳의 땅을 살펴보니 서북은 육지와 밀접하며, 여러 진(鎭)이 둘러싸고 동남은 섬들이 늘어져 있어 연속되니 내지와 거의 다르지 않거늘 빈 땅으로 버려두고 다스리지 않으니 풀만 무성하게 되어 진실로 하옵니다. 백성들의 바람은 이를 경작하여 배고픔과 갈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이를 나누어주어 세를 거둬는 이익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만 도내의 의논으로 이르기엔 이 땅의 기름짐은 온 나라를 통틀어도(비교할 곳이) 없는바 만약 백성들에게 허락을 허락하면 반드시 권세 있는 집이나 세력 있는 무리에게 돌아갈 것인바 그렇게 되면 백성들에게 경작을 허락하는 것이 반드시 공가(公家)의 이익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신계책(計)는 이미 땅은 공가의 소유가 된 즉 전답을 측량하여 경작할 수 있는 곳은 결부(結負)를 알게 하고, 그 수를 나누어 그중 좋은 땅 한 곳을 택하여 연이어 있는 곳은 1할은 공전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사전으로 하십시오. 백성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구일지제(九一之制)(정전제)에 의거하여 사전 1결을 받으면 곧 공전 12부 5속을 경작케 하고, 사전 2결을 받으면 공전 25부를, 사전 3결을 받으면 공전 37부 5속을, 사전 4결, 5결 이상을 받으면 또한 모두 계산에 의하여 더 경작하게 하되, 인력(人力)이 많은 자는 많이 받아 더 경작하게 하고, 인력이 작은 자는 적게 받아 적게 경작하게 하되, 대략 한집에서 받는 것은 많이 받아도 5결을 넘지 않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균등하게 받아 경작을 쉽

게 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공전의 경작을 돕게 합니다. 세금은 면제하지 않고 그 세전(稅田)은 주(周)나라의 정전법(井田法)과 같이 하되, 8가구를 1통(統)으로 하여 매 통마다 나이 많고 근심한 2명을 택하여 통장(統長)으로 세우고 농사짓고 수확하는 일을 모두 관장하게 하되, 공전을 먼저 다스린 후 사전을 경작하도록 합니다. 그 가운데 게을러서 공전의 경작에 부실한 자는 규칙을 정해 벌을 주고 심한 자는 경작처를 바꾸며, 본관 수령으로써 감농관(監農官)을 겸임시켜 농사와 김매기를 감독하게 하고 가을걷이는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그것을 하도록 할 경우 반드시 많은 농호가 관곡(官穀)을 훔치는 폐가 많은 읍의 강직한 관원으로 하여금 수확의 일을 감독하게 하고, 마도진 내에 따로 창고를 세워 곡식을 저축하고 그 가운데 하나는 영진군사의 지공(支供)경비로, 하나는 만일의 군사사태에 사용할 것에 대비해 저장해 두는 것으로 하여 원대한 계획이 되게 하시라고 어리석게 해 아립니다.

이 섬의 전답에서 경작 할 수 있는 곳은 본 현 사람들은 1천여 섬지기라고 말하는데

이때 대강의 타량(打量) 수를 짐작하여 기록하여도 거의 600결에 이르는데, 매결을 2~3마지기로 하여 계산하면 8~900 여 섬지기에 이릅니다. 1섬을 파종하면 30여 섬을 수확할 수 있고 여기서 9분지 1을 취하여도 1년에 걷을 수 있는 바가 3000여 섬 일 뿐 아니라 1결의 소출을 한 해를 대략 계산하더라도 9결의 상상년(上上年)의 세금의 2배가 되어 국가와 백성 양쪽 모두 이익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혹 받아들일만한 말이 있으면 관련 관청으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전답의 결수와 땅의 모양은 해당관청에 부침문서로 보내도록 하고 순천 방답진(防踏鎭)의 군사들이 올린 소장(訴狀) 내에 돌산도(突山島)에 있는 국둔전(國屯田) 60여 섬지기를 전에 좌수영 소속 각 진포 수록군사들을 가려 뽑아 경작하게 하여 석보창(石堡倉)에 넣어두고 군자(軍資)에 보태 쓰게 하였는데 이 수군·육군의 군사들 또한 농사짓는 역(役)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진도(珍島)섬 안에 사는 병사 100호는 전답이 없으므로 이 둔답을 군자로 삼고자 하여 각기 바라는 바를 본도 감사가 아립니다.

해당 관서에 문의하여 원하는 바에 따르도록 아울러 만들어 문서를 아래로 내려 보낸 후, 경연관이 보고한 바로 다시 그 곳의 목자간(牧子干)들 또한 반이 넘게 몰래 농사 지어먹고 있거늘 별무(別無)한 뜻으로 그 둔답을 전과 같이 경작하되 반은 방어(防)의 군자(軍資)로 하고 반은 예에 따라 석보창에 넣어 군자에 보충하도록 하라고 호소하거늘 신이 가서 본 그때, 경연관이 보고한 바 왜인의 노략질이 전라도

돌산도를 거쳐 침구해 온다 하는 바 이 섬은 전라도와 경상도 양 바다 사이에 있어 전라도의 사도(蛇島).여도(呂島), 경상도의 미조항(彌助項).평산포(平山浦) 좌우에 서로 끼어 있을 뿐 아니라 전라도의 동남쪽 변(邊)에 방답진(防踏鎭)을 설치하였는데 왜인들이 이 섬을 거쳐 전라도에 노략질을 해온다고 말하는 자는 아마도 잘못 들은 바를 아뢴 것이오며 부근에 사는 거민이 바닷길 1식(息)의 거리를 배를 타고 다니기 어렵다 라고 하거니와 이 섬은 또한 좌수영으로 드나드는 포구이며 그 넓이는 한 마장(2h) 거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 인 바 들어가 경작하기 어렵다는 말은 또한 잘 모르고 보고한 것입니다.

누군가 배를 만들 목재를 기를 곳이 이 섬이라고 말한 즉 지금 그 금지조항이 없고, 누군가는 말을 놓아 기를 목장이 이곳이라 말한 즉 처음에는 경작을 금지하는 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백성에게 피해가 미친다하여 이처럼 금지하고 놀리는 땅으로 되돌린 바, 지금까지 변경의 땅이 비고 군량이 결핍된 때 백성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허락함으로써 토병을 실하게 하고 군수물자를 보충하는데 편리하며 전년에 한 변방에서의 소출이 800여 석을 내려가지 않는다 하오니 이곳에서 나온 것을

거두어 따로이 저축하여 좌도의 영진 군사들의 식량으로 제공 하옵시고 방군대가(放軍代價)의 폐단을 영구히 혁파 하옵시면 더욱 일이 합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잘 헤아려서 시행하심이 어떨까하는 까닭으로 아뢰는 일입니다.

[각 고을, 각 진(鎭)의 폐단사]

승정원에서 뜯어 볼 것.

신이 지니고 온 수교(受敎)f1h사목(事目)내에 이번에 변방의 대비태세와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고★★전하신 바로써 신이 도내를 순력하면서 군민이 받는 폐를 물어 살피고★★하되 우리나라의 여러 군사들 중 가장 힘든 것이 수군의 역인데 ★★중에서도 이 도(전라도)의 군역은 더욱 힘이 듭니다. 매년 제주도의 원병선(浚兵船) 격군(格軍)f2h 및★★ 경기 황해도 등의 이전선(移轉船)의 격군의 역은 경상도 수군에게는 없는 역이고 또 제주도의 원병선 격군의 역은 충청도 수군에는 없는 역일 뿐 아니라 본도는 여러 섬에 병사를 배치해야 할 곳이 더욱 많기 때문에★★바다에서 막아야 되는 고통은 다른 도보다 더욱 심합니다. 때문에 유망하여 절호(絶戶)된 것이 10호중 4호이며,★★ 일족과 이웃에게 책임을 지워 침탈당하니 만약 별도로 구호의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변방을 지켜 보존할 방도★★없을 것이어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그것의 하나는 신역(身役)이거니와 신역 외에 수영에 납부할 진상(進上)f1h, 방물(方物)f2h에 소용되는 값비싼 물건들은 병영의 예에 의거하여 각 군현의 전결수로 나누어 정하시거나 바람이 크게 일어난 후 제방(除防)f3h으로 납부한 대량미(代糧米)나 전선의 경비를 돕는 포(布), 구황염(救荒鹽)f4h 등의 물건수를 헤아려 방물 값을 내고, 그 원래의 것을 본도에 옮겨 사서 납부하게 함으로써 폐단을 제거함이 어찌합니까.

제주 원병선의 격군은 매년 3월 초에 들여보내는 것인데 제주목관이 연례적인 진상마(進上馬) 실어 보내는 일을 핑계로 잡아두고 보내지 않다가 마필을 정리한 후 6월 사이에야 실어 보내기 때문에 4.5달을 머무르며 기다리는 동안 여러 곳에서 밥을 빌어먹으니 그 고생스러움이 매우 심할 뿐 아니라, 또 집에 돌아가도 농사지를 시기가 지나버리기 때문에 생업을 잃어버리게 되어 유랑걸식하게 되니 그 불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후로는 제주 3읍f5h에서 진상하는 제주말을 실어 보낼 때 격군은 다른 규정으로 조치하여 뽑아내거나 뽑아낼 방도가 없으면 마필을 1.2월내에 모든 수를 정비하였다가 구원병선이 들어간 즉시 실어 보내면 오래 머물게 되어 고통을 받는 폐단을 없앨 것입니다

경기도 등으로 옮겨간 선격군은 함께 갖지만 수사(水使)의 명령이 한결같지 않아 혹은 제방(除防)으로 뽑히기도 하고 혹은 제방이 되지 않아 같은 집의 다른 사람이 대립(代立)f1h하기도 하거니와 격군들이 상경 입번할 때 필요한 군량을 이미 같은 호에서 거두었는데 또 동호(同戶)의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 번을 서게 하니 원통함이 극심합니다. 이후로는 이전된 선격군은 제방(除防)시켜 거듭 역을 지는 원통함이 없게 하는 것이 어찌합니까.

각 진(鎭).포(浦)에 속하는 비거도선(鼻巨舠船)f2h과 조운병선(漕運兵船) 등을 을묘왜변(乙卯倭變)f3h이 발생한 후에 전선으로 개조하고 아울러 혁파하되 그 배의 비품인 초둔(草菴)f4h, 삼갑삭(三甲索)f5h, 조삭(條索)f6h 등의 물건을 계산하여 줄여 기록하지 아니하므로

수군 등이 해마다 고쳐서 다시 준비해야 하는 폐단이 적지 않으니 배에서 당장 필요한 비품 외 이미 감소시킨 비품은 수사에게 명령을 내려 수효를 서로 살펴 보고하게 한 후 총계를 감소시켜 기록함으로써 폐단 하나를 없애는 것이 어찌하옵니까?

수영(水營)은 창곡(倉穀)이 있는 각 고을과 같지 않거늘 매년 사복시(司僕寺)f7h에서 나누어 기르도록

말을 5.6필씩 보내기 때문에 사육하는데 먹이는 쌀.콩 등 곡식을 모두 수군에서 내야 할 뿐 아니라 대 여섯 마리를 돌려보낼 때 작지(作紙)f8h 명목으로 목면 5.6필, 3정가(三丁價)f9h로 목면 20여필 및 말을 꾸밀 여러 용구를

수군들에게서 거두어 상납하는데 따르는 원망이 매우 심합니다. 이후로는 말을 나누어 기르도록 보내 오면 영문(營門)에서 나누어 보내지 말아 그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각 진(鎭).포(浦)에 들어가 근무하는 수군들은 각기 진포의 군기를 고치고 전선(戰船)을 개조하고, 또 배 위에서 신역을 담당하거늘 수영에서도 군기(軍器)에 소용되는 온갖 물건을 등패(等牌)f1h에 이르기까지 부담 지워 공공연히 납세를 독촉하니 수효가 많지 않은 각 포의 군졸들은 거듭 침탈당하여 편할 날이 없으니 이후 각별히 엄히 금지하여 그 폐를 없애는 것이 어떠합니까.

군산(群山).법성(法聖)의 양포(兩浦) 만호(萬戶)는 매년 전세를 배로 운반할 차사원(差使員)으로 뽑혀 상경했다 돌아오는 데 그 기간이 서너 달에 이릅니다. 이 사이 수영의 군관을 가장(假將)f2h으로 삼아 보내는데, 가장(假將)은 진의 방비하는 일에는 전혀 맘을 쓰지 않고 오직 달수만 계산하여 방군시킨 이에게서 베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것을 급무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 포의 진중의 여러 일들이 모두 엉망이 되고 군졸 역시 침략을 당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후로는 조운의 차사원(差使員)은 충청도 아산창(牙山倉)의 예에 따라 근처 각 포의 첨사(僉使).만호(萬戶)로써 윤번(輪番)차정하여 그 폐단을 제거함이 어떠합니까.

수군은 호수(戶首)f1h나 보인(保人)f2h를 막론하고 번갈아 가며 근무하도록 하므로 도망자는 그 친척과 이웃에게까지 각기 번차도목(番次都目)f3h을 만들어 보내되 각 고을이 그 도목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입방에 임하여 급히 만들어 보내니 원군(元軍)은 자신의 근무 날을 스스로 알아 기한이 되면 돌아가 거니와 일족에서 대신 근무를 서는 사람은 때가 되어도 알지 못해 입방기한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각 진포에서 근무누락이 발생하므로 그 고향고을에 이문(移文)을 보내어 처자를 가두고 독촉하여 근무지로 보낼 때 각 고을의 색리(色吏)와 본 포의 차사들에게 폐단을 많이 받아 고통이 매우 심합니다. 이후 유망한 절호(絶戶)의 일족으로 근무하러 온 사람은 각 고을의 수령이 가깝고 가깝지 않은 사정을 친히 헤아려 미리 명부를 만들도록 시켜 근무에 누락되어 침탈을 받게 되는 원망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을묘년f4h 이후로부터 각 곳의 봉수(烽燧)의 총군(充軍) 6명 외에 품관(品官) 1인, 감고(監考) 2인씩을 별도로 정하고 2번(番)으로 나누어서 망보는 일 등을 감독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지만, 각 고을에서 혹은 늙어서 제외된 사람, 혹은 하번(下番)인 군사, 혹은 군의 보인(保人) 등을 뽑아 입번시키니 이들은 신역 외에 별도의 일로서 스스로 식량을 싸가지고 한달 보름의 긴 시간을 봉수에서 근무해야 하는 바 원망과 고통이 막심하옵니다. 당초 품관.감고를 별도로 세운 것은 그로 하여금 봉졸을 검속하게 하여 망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본 뜻이옵거늘 각 고을 수령이 또 사사로운 정에 끌려 실품관(實品官)을 뽑지 않고 힘없고 연로한 사람이나 다른 역이 있는 사람 등을 부실하게 총정하니 폐단만 있고 이익은 없습니다. 이후로는 각별히 단속하여 연로자나 다른 역이 있는 사람은 일절 뽑아 올리지 말라 하고, 총군 6명으로 망보는 일을 하게 함은 부족하지 않은바 별도의 품관.감고는 매달 3명씩, 2교대로 하지 말고 매달 2명씩 3교대로 하여 서로 교대하여 번을 서게 해서 그 역을 험하게 해 고통과 역을 기피하려는 폐단을 없게 할 것입니다. 좌도의 각 진(鎭).포(浦)와 우도의 진도군(珍島郡)은 봉수 별장(別將)을 입번한 군졸로서 나누어 정해 살피게 하시고 진군이 있는 그 밖의 각처는 봉수처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여

품관.감고를 두어 입번 군졸과 서로 참작하여 나누어 정해 한쪽에 부담과 고통이 치우치지 않도록 함이 어떠합니까?

이진포(梨津浦)에 방군(防軍)으로 입번한 임피(臨陂)의 3교대 기병 등은 처음부터 이 진을 방어하는 군사가 아닙니다. 갑술년(1574, 선조7) 군적(軍籍) 작성 시 영광군에서 이진포에 번을 서러 오는 3교대 기병 8호를 절호(絶戶)였다하여 임피현에서 내도록 옮겨 정한 후 이전부터의 방어처라 하여 이진포에서 여전히 입번 하도록 한 바로써

대저 내지(內地) 군사는 본 고장에 부방 할 곳이 없으므로 각각 부근으로 나누어 입방시키지만 연해에 방어할 곳이 있는 토병은 각기 그 고장에 분속되어 입방케 해야만 식량을 가득 가지고 멀리 근무하러 가는 폐단이 없어지고, 군호(軍戶)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혹은 번고가 일어나면 부모처자가 그 땅에 있고 가재전답도 그 땅에 있으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죽기를 각오하고 적에 대항하여 반드시 승리를 얻고자 할 것입니다. 그 국가를 방어하는 계획에서 그 이익이 매우 크거늘 나머지 다른 연해는커녕 가장 방어에 긴요한 곳에서 오래 전부터 본고장의 분방(分防) 군사들을 어지럽게 다른 곳으로 옮겨 보내고 내지의 타관 군졸로써 대신 충당함은 참으로 옳지 않으므로 다시 바꾸어 옮겨 정함이 어떠합니까?

어란포(於蘭浦)에 입번하는 수륙(水陸)군졸들이 모두 연명으로 올린 소장(訴狀)내에, 본진은 큰 바다에 접하여 남으로는 큰 섬이 있고 서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어 만약 적이 와서 먼저 산에 올라가면 진성(鎭城)의 내부를 흰히 굽어볼 수 있어 무릇 군졸의 많고 적음과 기계의 허실이 쉽게 들어 날 뿐 아니라 진 가운데 샘이 없고 다만 성밖에 얇은 샘 두 곳만 있을 뿐이어서 잠깐의 가뭄에도 물이 끊어지므로 언제나 크고 작은 손님이 진에 오게 되면 십리 밖에서 물을 길어와 대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거늘, 만일 적이 와서 진을 침범하면 많은 군졸이 목말라 죽어갈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육로의 출입에는 단지 한 길목만이 있을 뿐인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서로 쳐대며 길을 깎아대니 사람이 통행 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돌을 쌓아 길을 내었는데 그 너비가 한 뼘도 못되거늘, 만일 적이 들어와서 성을 포위하면 구원병이 들어올 길이 없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참으로 작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평상시 전선을 정박시켜 둔 곳은 사방에서 모래바람, 돌바람을 받는 땅으로 큰 바람이 한번 불면 하루사이에 배들이 모두 깨져, 해마다 개조해야 하므로 군이 큰 폐를 받고 있습니다. 을묘(1555)년 왜적이 크게 침범해 왔을 때 진을 지킬 방책이 없어 배를 버리고 도망친 까닭에 진이 함락 당했거늘 본 포가 진을 설치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포의 동쪽에 강(江)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바라보이는 곳으로 갈두(葛頭)라 칭하는 사랑포(思郎浦)는 산이 이어지고 나무가 무성하며 돌이 첩첩히 쌓이고 큰 냇가가 있는 곳으로서 바다가 잘 보이는 하늘이 내어 준 설진처(設鎭處)의 형세이므로 을묘년에 성이 함락 된 후 이곳으로 옮겨 설치하려고 도순찰사(都巡察使) 앞으로 정장(呈狀)을 내어 장차 진을 옮기고자 했으나 당시 수사(水使) 최호(崔浩)가 홀로 따르지 않아 지금까지 진을 옮기지 못하여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신이 그 형세를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진을 세우기 합당하지 않은 곳임은 군인(軍人)들이 아뢴바 대로입니다. 을묘년에 함락당한 고달도(古達島)의 터를 신이 가서 보았더니 산이 높아 진을 굽어보고 육지와 통하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이 진과 형세가 대개 서로 같았습니다. 다른 날 뜻밖의 변이 있게 되면 전철(前轍)을 밟는 일이 될 것인즉, 이 진 설치의 편부(便否)를 본도의 감사.병사.수사에게 명령하여 충분히 잘 살피고 상의하여 보고토록 하여 결정함이 어떠합니까?

각도의 병사 수사들 또한 영문(營門)에서 사용할 것이 부족하다고 군관을 조방장(助防將)이라 이름

붙여 소속의 진포에 나누어 보내 필요한 물건을 입방군사들에게 책임지워 거둘 뿐 아니라 노(奴)의 식량과 말먹이 외에도 방군수포(放軍受布)f2h까지 하니 그 폐단이 매우 커서 궁잔(窮殘)한 군졸들을 침탈함이 여러 갈래이며 외람되기까지 하기 때문에 신이 공문을 보내 군관을 보내지 말라고 금지시켰거니와 조정에서도 각별히 금지시키는 규정을 세워 군졸의 폐를 제거하도록 함이 어떠합니까?

포작간(鮑作干)f3h은 배를 잘 부리고 바닷길을 잘 알아 긴급할 때의 쓰임에 이들보다 더 활용하기 좋은 사람들은 없는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 배를 집으로 삼고, 오로지 물산이 있는가 없는가, 땅주인이 인자한가 가혹한가를 따져 거취를 정하거늘, 계유년(1573, 선조6)부터 영문 및 각 관(官), 포(浦에) 분정시킨 후, 소관의 각 처(處)가 자신의 소유물인양 인정하여 오로지 부릴 것만 생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므로 갈 곳 없는 도망자들이 이로서 매우 많아져 심히 놀랄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각처에 영구히 매이도록 정하지 말고 연해에 사는 포작간들을 매년 조사하여 문서에 기록해 그 원래의 수를 알 수 있게 해서, 평시에는 노동력을 침해하지 말고 마음대로 물고기 등을 잡아 생활하게 하다가 사변이 있으면, 가까운 관에 분정시켜 승선(乘船)하도록 하되, 감사가 순행 할 때와 어사가 적간(摘奸)f4h할 때

문서와 이름을 대조해 살펴서 만약 도망자가 있거든 그를 관장하는 진장(鎭將), 수령(守令) 등을 낱날이 벌주고 평상시에 그들이 침착 당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해 줌이 어떠합니까? 일족(一族)이 역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 지금의 큰 폐단이 되었는데 군민이 살아가기 어려운 폐단이 모두 이것에서 나온다 합니다. 여러 명목의 군호(軍戶)는 각자 입역(立役)하는 곳이 있으므로 일족을 총당 입역 시키는 것은 비록 원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득이하옵나만, 각관이 도망한 향리와 관속, 관노비의 신역에 이르기까지 정군(正軍)에 부담지우니 이중 삼중으로 폐를 받아 그 고통이 매우 심하니 몹시 부당합니다. 각별하게 조칙(條則)을 세워 일체 금지시킬 일입니다. 각 고을의 원래 부방하는 별시위.감사 등의 녹포(祿布)를 예로써 경상도에 떠맡겨 주게 하였는데, 그들이 1년에 (원래 몫으로) 석 달 번을 서고, 또 제주에서 별도의 부방을 다섯 달 서니, 입방하고 돌아오는 일도 일신에 겨를이 없을 뿐 아니라 녹(祿)을 길이 먼 다른 도(道)에 나아가서 받을 수 없어 서울에서 모리인(牟利人)에게 겨우 10분지 1의 가격밖에 받지 못하고 (팔아넘기므로) 모두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 녹봉을 본도(本道)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모여 진정하오니 해당 관청에서 헤아리고 살펴 시행토록 명령을 내리심이 어떠합니까. 군기(軍器)중 지갑(紙甲)f1h 또한 갖추는데 폐가 많고 전쟁에 쓸 수 없는 이유를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였어도

조정이 아직도 이에 따르니 않는 바, 반드시 그 이유는 있겠지만, 도내 각 관에 정해진 지갑의 수는 많게는 4천 330여 부로, 많은 곳인 전주부(全州府)는 거의 600부에 이르고, 적은 곳인 진산(珍山), 용담(龍潭)도 20부를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한 부의 값은 상례로 정목(正木) 1필로 친다고 하므로 한 번만 들어 갖추는데 그 값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종이를 겹겹이 붙여 풀칠해 만드니 쉽게 종이 먹어 여름을 한번 지내면 그냥 파손되어 쓸 수 없게 되니 해마다 다시 만들어야 하는 폐단이 끝이 없습니다. 병영(兵營).장흥(長興).강진(康津) 등은 을묘년(1555) 난리f1h로 불탄 후 군기를 다시 마련할 때 지갑이 별 쓸모없다는 사실을 조정이 자세히 알아 엄심(掩心)f2h으로 바꿔 만들어 지갑의 수를 보충토록 하였습니다. 비록 예로부터 전해온 물건을 한번에 완전히 혁파 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해도 수를 헤아려 감해서 엄심으로 대신 만들게 하여 각 읍의 끝없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 어떠합니까?

가리포(加里浦)f3h 성 아래 사는 토병 100여인이 올린 진정문에, “이 진(鎭)이 지난 임오(1522, 중종17)년 설립된 후 성 밖 5리 정도 안의 전답을 각기 경작하여 삶을 꾸렸습니다. 갑자(1564, 명종16)년에

강진현감 최제운(崔霽雲)이 첨사(僉使) 양사철(梁思哲)과 목은 원한이 있어

해코지를 하고자 꾀하여 민전(民田) 근처의 띠풀이 불탄 일을 완도(莞島)의 황장목(黃腸木)f1h이 있는 곳을 불태운 것처럼 보고해 올리매, 그곳의 민가를 철수시키고 전답의 경작을 금했기 때문에 우리들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이 한 조각 땅도 경작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점차 유산하여 진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경작을 금하는 곳은 다시 복구되기를 바랄 수 없거니와 진성 아래의 범진포(凡鎭浦)로부터 대견두(大犬頭)f2h까지 2마장f3h 거리 정도는 매년 불을 놓아 황무지가 된 곳이므로 이를 경작하여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소연합니다.

이곳 가리포는 적이 침노하는 처음 길로써 고립된 외로운 섬으로 비록 입방군졸이 있다 하여도 토병(土兵)으로 충실하게 하여야만 방어에 근심이 없을 것인데 완도(莞島) 소나무를 기르는 곳이라 하여 일절 경작을 금하니 살아갈 방도가 없어 날마다 쇠잔해짐은 토병들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범진포(凡鎭浦) 근처에서 적선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해마다 불을 지르니 초목이 없이 버려진 땅이 된 바 이를 내주어 농사 지어먹게 함으로써 방어를 튼튼하게 함이 어떠합니까?

진도군 지력산(地歷山)f4h 목장에서 철거된 백성 50여명이 소를 올려 진정한 내용에 “우리의 조상이 처음 말 목장이 설치되기 전에 농사지던 전답이 천순(天順), f5h계미년(癸未年: 1463), 홍치(弘治)f6h 병진년(丙辰年: 1496), 가정(嘉靖)f7h 을유년(乙酉年: 1525) 등의 해에 양전(量田)할 때 장부에 등록되어 영구토록 지어먹게 하였다가 을미년(1535, 중종 30)에 점마(點馬)f8h가 올린 보고에 의해 비로소 경작이 금지되었는데 신해년(1551, 명종 6)년과 계축년(1553, 명종 8)에

백성이 농사짓는 것을 허락한다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 호조 또한 따라서 경식(耕食)하게 하였거늘 을묘년(1555, 명종 10)에 비로소 그 조상 전답을 찾아내어 여러 해 동안 지어 먹었는데, 임술년(1562, 명종 17)에 점마사(點馬使) 민덕봉(閔德鳳)이 원전(元田)의 모든 수를 구분하지 않고 금지시킴에 남녀 백성들 1790 명이 집이 철거되어 쫓겨 난 후 오늘날까지 경작을 할 수 없어 유리걸식케 되어 원망과 근심이 매우 심하므로 조종소에서 매년 지어먹게 허락했던 것에 의거하여 장부에 전하는 원전을 옛날처럼 경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뢴다고 합니다.

진도군이 바다 가운데의 섬으로써 땅은 좁은데 산이 많고 들이 좁아 농토가 매우 귀해서 백성의 살아갈 방도가 실로 의지할 바가 없거늘 지력산 목장이 군의 서쪽 구석에 있어 사방의 둘레가 100리 남짓 되는데, 평지 넓은 들의 (경작을) 모두 금지시킬 뿐 아니라 바닷가의 경작할 수 있는 땅도 역시 경작 할 수 없게 하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경작하며 편안히 살던 백성들을 파산시켜 생업을 잃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니 그 원망하고 통탄함이 어찌 극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 땅과 서남해의 왜적들의 길목인 초도(草島), 우이도(牛耳島), 흑산도(黑山島) 등의 서로 바라볼 수 있는 땅에는

적선이 침범하기 쉽기 때문에 목장 내 가점곳(加點串)에서 군사가 밤낮으로 수비하고 살펴야 하거늘 집을 부수고 백성을 쫓아 내어 그 땅을 버려두는 것은 변방을 견고히 하는 계책이 아닙니다. 목장 안의 땅이 지극히 광활하여 비록 이미 일찍이 장부에 붙여진 전답은 옛날처럼 지어먹을 수 있게 백성들에게 허락하셔도 이밖에 수초(水草)가 풍부한 넓은 빈 땅은 농사짓고 있는 곳보다 백배나 됩니다. 한 구석에는 백성이 살고 한구석에는 말을 기르며 양쪽 모두 서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귀하고 가축은 천하다는 뜻으로 말한다면 차라리 목장을 하나 폐하여 백성의 삶을 보존시킴이 왕정의 마땅한 바라 할 것이거늘 하물며 백성의 삶이 안정을 얻고 마정(馬政)이 어그러짐이 없으며 아울러 방어가 굳게 되거늘 국가는 의심 없이 시행하여 편하고 이익이 되게 하십시오. 해당관서에서 상세히 헤아려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리심이 어떠합니까?

흥양(興陽) 도양장(道陽場)에서 철수된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장부에 기재된 원전을 되돌려 지어먹고자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전답을 백성들이 지어먹도록 허락함이 일의 이치에 합당함은 전에 본도 감사(司諫)가 이미 상세하게 적간(摘奸)하여 보고하였을 뿐 아니라 언관(言官)f1h에서도 그 곡절을 살펴 보고한 바 있으므로 임금께서 이미 밝게 알고 계시는데 신이 다시 일의 전말을 되뇌어 상(上)의 귀를 더럽힐 수 없습디만, 신이 녹도(鹿島)를 순찰할 때 목장 안을 살펴 본 바 주변이 광활하여 넓디 넓게 보이거니와 비록 천억 마리의 말을 기른다 하여도 땅이 좁음을 근심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목자간(牧子干)들이 법외의 술정(率丁)을 거느리고 와 예전에 경작하던 곳을 모두 경작하는데 이름은 진전(陳田)에 들어간다

하지만 실은 옛날에 경작했던 곳으로 본주(本主)의 원통해 함이 뼈에 사무쳐 반드시 되돌려 받고자 하는데 정리(情理)가 진실로 그러하옵니다. 이 땅은 적의 침입로에 해당하는 요충에 가까운 곳이므로 예로부터 왜놈들이 이곳 변경을 여러 차례 침범하였거늘 백성들을 몰아내어 변지(邊地)를 비게 한 것은 실로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대개 다른 목장은 마정 또한 중요하므로 백성들에게 경작을 가볍게 허락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도양장(道陽場)과 지력산(地歷山) 목장은 방어해야 할 매우 변방의 땅으로 방어의 위급함이 마정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관서에 명령을 내려 다시 백성과 마정 양쪽의 편리함을 참작, 처리하여 변방의 방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조군(漕軍)f1h 역은 여러 종류의 군인 중에서 가장 힘들 뿐만 아니라 본도의 좌도(左道) 조군은 역을 수행코자 왕래하는 길이 매우 먼데다가 지원도 받지 못하매 좌도 연해의 각관 전세도 옮겨 수송하는 길이 멀기 때문에 법성창(法聖倉)f2h에 납부할 세곡 운반선의 운반 값이 서울로 보내는 배 삿 못지않습니다. 법성창에 납부할 때 주인(主人)f3h과 색전(色典)f4h이 어거지로 빼앗는 물건은 경창(京倉)에 들이는 때 보다 갑절이나 되어서 갑술년(1574, 선조7)에 좌도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해운판관(海運判官)f5h이 호조에 보고한, 좌도 연해 각관의 전세를 본관의 수령이 감독하여 받아 경창(京倉)에 직접 올려 보내는 것의 편부를 광양(光陽) 등 10여 고을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 물어 계문토록 한 것을 호조에 내리셨거늘, 법성창의 창고 아래 사는 모리배들이 마치 조군들이 하소연하는 호소문인 것처럼 하여 직접 경창으로 수송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속여

호조에 아뢰어 옛날처럼 시행하도록 한 바 좌도의 연해 거민들이 갑술년 공사에 의거하여 각기 본관에서의 상납은 조운선이 아니라 사선(私船)을 임대하고 격군만 조군으로 갑합(勘合)f1h한 안(案)을 만들어 경창(京倉)으로 직접 납부하여 보내고자 다수가 소장을 관아에 냈습니다. 이것의 편부를 다시 이문(移文)을 보내어 물어 시행토록 해서 좌도 조군과 세호(稅戶)의 폐단을 제거토록 함이 어떠합니까?

전세(田稅)를 상납할 때 연해 각관의 가조군(加漕軍)f2h 등은 정군(正軍)과 공사천(公私賤)을 가리지 않고 원래 조군으로써 스스로 추천토록 하여 충군했기 때문에 조군들이 마음대로 다루어 다수가 명부를 올리니, 갖가지 방법으로 위협하고 이를 핑계대서 뇌물을 받으니 연해의 백성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하소연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이후로는 임군(賃軍)f3h의 가포(價布)를 각 배를 통솔하는 각 선의 천호(千戶)와 영선(領船)f4h 등에게 나누어주어 그들이 조창 아래 사는 노를 잘 다루는 사람을 편의에 따라 모집해 명부를 함부로 올리지 않게 함으로서 백성들의 예전에 없던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부안(扶安) 위도(狷島)에 근래 들어 청어(靑魚)가 드물게 잡히므로 청어잡이 배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는데 각 관청의 세금장부(稅案)에는 여전히 옛날의 수효로 되어 있고 감면하지 않은 때문에 청어잡

이 배의 감고(監考) 등이 그 수를 채워 납부할 수 없으므로 잡어배(雜魚船)을 구분하지 말고 청어의 세안(稅案)으로 채워 상납하고자 호조에 하소연하거늘, 호조에서 ‘잡어선을 아울러서 청어세의 수효를 채우라’고 문서를 내려보내니 해변 어민을 모두 다 세금장부에 포함시켜 세금을 독촉하니 의지할 땅이 없어 물(水)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망하게 되고, 그 배의 세금을 일족(一族)이나 이웃에 떠넘겨 상납토록 독촉하니 원성이 매우 심합니다.

평상시 각읍 어선의 세안은 각기 잡아오는 고기를 감찰차사원(監捉差使員)이 그 행장(行狀)을 살피고 그 배의 수효를 계산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올려 보내 납세토록 함이 법이거늘, 요즈음 청어가 잡히지 않는 까닭에 여러 곳의 잡아 잡이 배에까지 청어 세금 장부로 만들어 보내 납세를 독촉하는 것은 국가에서 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마땅한바 이후에는 청어선세는 차사원으로 하여금 그 잡는 배의 수효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거두어 상납하도록 하시고 별 관계없는 잡어선은 일절 수를 채우는 데서 제외시켜 해변에 사는 백성의 폐를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부안현의 연해 백성들이 고통거리를 호소한바 현의 어선(漁船) 세안(稅案)은 당초 항상 현에 있으면서 튼실한 배만 장부에 올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옮겨 와 잠시 머무는 작은 어선까지 가리지 않고 장부에 기록한 바로써 (이 배들은) 해당 관서에서 기록한 후 즉시 도망가 버리므로 이들 배의 세금을 부득이 일족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상납토록 하며 그중 이웃과 친척이 없는 자는 세금을 낼 방도가 없으므로 민호(民戶)에게 나누어 내도록 하니 한 고을 전체가 피해를 당하므로 원망과 고통이 매우 심합니다. 해당자가 없어 거두지 못한 어세(漁稅)이지만 3~4 년을 한정하여 옛날 기미년(1559, 명종 14), 경신년(1560, 명종 15)의 예에 의하여 편리함을 좇아 쌀로서 주(州)의 창고(倉庫)에 낼 수 있도록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편하게 해 주십사고 요청하는 바, 어선세의 탈루세는 실제로 걷지 못한 전조(田租)와의 사이에 짐작할 바가 있을 뿐 아니라 본 현 창곡 중에 먹을 수 있는 쌀 1천5백석을 이미 경창으로 옮겨 보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거늘 만약 가뭄이 든다거나 적이 침노해 오는 일이 있으면 구황(求荒)의 물자와 군량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관서로 하여금 헤아려 원하는 대로 하시되 다른 연해 각관도 이런 폐단이 없게 하시어 아울러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함이 어떠합니까?

순천부(順天府) 백성들이 호소한 바, “본부(本府) 창곡이 이미 옮긴 것이 거의 7천여 석에 이르는데 금년에도 가식미(먹을 수 있는 쌀) 1천5백석을 경창으로 옮기라고 떠맡긴 바, 본부의 회계에서 가식미 원수(元數) 1만 6천여 석에서 전년에 1천7십여 석을 황해도에 옮겨 보내고 창고에 남은 군량에서 환곡 몫으로 나누어 준 수 1만 3천여 석을 제하고, 받아들임을 마쳤을 때 모곡(耗穀)의 수는 가까스로 1천 3백여 석이거늘, 옮겨 보낸 쌀 1천 5백석, 군량미 90여석을 합해 모두 1천 6백 석을 상납해야 할 중에 4백여 석이 부족하므로 피곡(나락)으로써 쌀을 바꿔 그 수를 채운 바, 백성이 생활할 근본이 날마다 쪼그라들어 고갈되니 모두 걱정스러울 뿐 아니라, 본 부가 연해의 거읍(巨邑)으로 장수가 머무는 진(鎭)이라 만약 어떤 사변(事變)이 일어나면 버틸 수가 없으니 그 이전미를 내지(內地)의 모곡(耗穀)에 여유가 있는 각관에서 내도록 옮겨 정해 달라”라는 소장(訴狀)을 관아에 바쳤습니다. 순천부가 예전엔 넉넉하다 칭하였는데 근래에는 자질이 부족한 수령들이 거듭하여 와서 혹은 세력가에 아부하고자 탈루된 세금을 모두 감해주고 혹은 사리(私利)를 채우고자 사육을 함부로 부리니 예전에 저축해 둔 것에서 지금 5분지 1이나 잃어버려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습니다. 좌도의 연해에서 오직 순천부가 가장 크고 또 경상우도에 접해 있는데 만약 적변(賊變)이 이곳이나 그곳에서 일어나면, 장수가 배치된 진(鎭)은 이곳 밖에 없는지라 반드시 평상시에도 군수물자를 많이 쌓아두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야만 가히 만전의

계책이라 할 수 있거늘 여러 차례 옮겨 보내 모미(耗米)도 부족함에 이르게 되어 장차 원곡(元穀)을 사용한다니 이는 실로 좋은 계책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창으로 옮긴 쌀 1천5백석은 도내의 회계에 남은 쌀이 많이 있는 임피현(臨陂縣)에 옮겨 정하고 순천부의 쌀은 상납하지 말고 군수물자로 저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도내 각관에서 전세 및 공미(貢米)를 상납할 때 조운선의 가격군(加格軍)f1h은 매 1명당 가포 3필 반씩 지급하되 임사선(賃私船)f2h의 격군 등의 가포는 특별히 거론한 바 없는 바로써 그 사선이 받은 모든 가포에서 배의 임가(賃價)와 사공의 몫을 계산하여 제하면 격군이 받는 것은 겨우 쌀 뒷박 정도일 뿐이어서 백성의 원망이 매우 심합니다. 지금 해당관청에 명령하여 다시 참작하여 정해 백성의 원망을 없애도록 하시되 최근에 옮겨 간 곡물과 배 삿 및 격군가 등을 모두 연해 각관에서 내는 바이므로 군수물자가 고갈되고 변방의 방비가 허술해 질 것이 심히 염려됩니다. 지금 해당관청에서 함께 상세히 헤아려 내지의 각 관에서 곡물에 여유가 있는 곳으로 옮겨 수를 채워 변읍(邊邑)을 충실히 하게 함이 어떠합니까?

진산군(珍山郡)은 태조대왕의 태실(胎室)이 봉안된 곳으로 승격되어 군이 되었습니다만 본래는 산골에 끼어있는 공알만한 작은 땅이거늘, 공부(貢賦)와 잡역(雜役)은 다른 곳과 다르지 않아 애잔한 백성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므로 이전에 군민이 상언(上言)한 것에, 혹은 사신이 아뢴 것에 의하여 폐단을 줄여 (고을을) 회복시키도록 하라는 명이 누차 내려왔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큰 은택(恩澤)을 받지 못해 온 고을이 텅 빌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심히 근심스럽습니다. 해당관청에 명령하여 덜어 면제해 줄 수 있는 물건을 헤아려서 많은 수를 면제해 주어 백성을 회복시키도록 하십시오. 예조에 납부하는 진상물품 중 도련지(擣練紙)f1h 10권, 장지(壯紙)f2h 10권 등은 용담현(龍潭縣)의 예에 의하여 감해주십사고 호소하므로 아울러 헤아려 시행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화순현(和順縣)은 도내에서 매우 가난한 현인데 부과된 공부는 다른 고을과 다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1결(結)에서 내는 쌀이 해마다 30두(斗)에 이른다고 하는데 민생의 어려움을 이것에 비취보면 가히 알 수 있습니다. 공안(貢案)에 기록된 다른 상납물이라 하는

현의 악공(樂工)이 2명인데 가난한 읍에 노비수가 적다하여 1명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감한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금산군(錦山郡) 악공 1명을 옮겨 정한 바, 현의 노비가 부족하므로 악공의 봉족f1h을 부득이 도망노비로 정하고 매년 양가(糧價)를 오로지 친척과 이웃에 책임지우니 한 고을의 백성 모두가 폐를 입지 않음이 없습니다. 새로 1명을 정했으나 다른 큰 읍에 돌려 정하시라고 호소를 하니 해당관사로 하여금 원하는 바에 의거 시행하도록 함이 어떠합니까?

이 까닭으로 아뢰온 일.

만력 10년(1582 선조15) 7월 초 10일

전라감사 사직을 요청하는 소]

신이 본디 헛배가 부르고 걸리는 병이 있었는데 온갖 것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금년 7월 초에 이르러서는 병의 증상이 위(胃)로 옮겨져 찬 것을 마시면 힘이 없어지고 음식을 대하면 번번이 토해내어 오십여 일을 근근이 죽으로 연명하여 몸은 수척해져 뼈만 남고 능히 서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은망극하여 여러 방책을 다 하였는데 이달 초 2일 비로소 하부요처에 종기가 생겨 통증이 그치지 않고 또 속병 감기로 두통과 복통이 심하고 사지가 찢어지는 듯 아파서 신음으로 뒹굴며 잠을 설치고 한기와 열기가 반복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원기가 다하여 지척지간을 움직이는데도 모름지기 누군가에 의지해야 합니다. 생각컨대 신의 병은 상심(傷心)이 쌓인 나머지 발병하였는데 달포가 지나도 차도가

있을 것을 기약할 수가 없어서 여러 고을을 순심(巡審)할 수도 없고 번잡한 업무를 결재할 수도 없으니 하루를 관직에 있으면 하루의 폐를 끼치는 셈이니 지극히 황공하옵니다.

신의 직임을 속히 교체하시어 공사 모두를 편하게 하시라는 연유로 계(啓)를 올립니다.

<이상은 모두 전라감사 재임 시 올림>

[재궁(棗宮)제도에 관한 의견]

<이 글은 헌의(獻議)인데, 어느 때 것인지 알 수 없어 우선 여기에 붙여둔다.>

내외의 재궁(棗宮)f1h은 그 제도가 있고, 염습할 임금의 옷도 옛날부터 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국초에 제도를 정하면서 예(禮)에 의하여 재궁(棗宮)을 정했고 재궁을 보고 옷의 수(數)를 정했으니 지금 가벼이 의논 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번의 봉심(奉審)f2h은 대신과 중신들이 자세히 살피고 상의하여 아뢰어 정한 것이므로 신이 감히 망령되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미년 삼찬(三竄)사건 때의 상소 초]

<이 글은 계미년(1583 선조 16)에 올린 상소의 초안인데 여기에 붙인다. 머리에 ‘계미년 삼찬사건f1h 때의 상소초(癸未三竄時疏草)’라고 덧붙여 써 놓은 7자는 기옹(畸翁)f2h의 필적 같다.>

신은 용열하고 부족한 몸으로 외람되게 대신에까지 올랐으니, 성은이 크심을 천지간에 헤아릴 길이 없사오나, 조정의 시비와 국가의 득실에 어찌 한 두 가지 임금에 아뢰어 은혜에 보답하려는 정성이 없겠습니까? 생각건대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는 말은 신 또한 그 지목되는 사람 중에 들어있어 비록 지극히 공정한 말을 하더라도 투기하는 부인의 말처럼 믿기 어려움이 있어 침묵을 지키고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28일 여러 대부(大夫)들이 입시 한 후 임금님께서 노여워하시며 조정에서 청죄(請罪)하지 않음을 우려하여 우두머리로 거론되는 2인과 그 다음 3인을 모두 귀양 보내는 죄로 처리하려 한다는 말씀을 받자옵고, 좌우와 상의하여 신의 망령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죄를 청하지 않은 단서는 비록 두 신하에게 있으나 두드러지게 악하여 죄를 줄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어 이미 처리되어 지금은 모두 외직(外職)으로 나가 조정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 근원을 따져 끝까지 다스리게 되면 분란과 소요를 불러올까 염려되오니 좌우 여러 신하들의 말과 같이 그냥 두어 두십시오. 뒤의 세 신하에 대해서는 근래에 한 일이 임금님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박근원(朴謹元)이 막고 가린 간사한 정상은 오히려 허봉(許筓)1송응개(宋應漑) 두 사람보다 심하여 신귀(神鬼)가 내려 와 죄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죄에는 경중이 있는데, 그러나 임금님께서 내리신 벌은 그 죄보다 지나친★★ 조처가 마땅함을 잃었고★★ 장차★★ 상소를 올려 임금님의 권위를 높여 드리려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말을 냄에 조리를 잃었습니다. 가로되 “중하게 치죄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나 옳고 그른 시비는 불가불 보여야합니다”라고 한 것은 단지 가볍게 벌하여 견책함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징계하려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시(入侍)한 다음날 앞드려 들건대 명령이 이미 내려져 누구는 회령(會寧)으로, 누구는 갑산(甲山)으로 유배되었다고1)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니 아주 황공하고 놀랐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 축출하거나 돌려보낸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서 인은(仁恩)이 널리 퍼져 내외를 윤택하게 하였는데 형극(荊棘)의 길이 하루아침에 시작되니 성세(盛世)의 일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신은 이에 입으로 낸 말이 한(恨)이 되어 슬픔을 드러내지는 못하오나 관대한 은전을 청하며 생각을 개선하여 상소하오니 원컨대 은혜를 베푸시어 송응개와 허봉의 죄를 좀더 가볍게 하여 감해 주시옵소서.

서로 의논하여 올릴 말씀은 감히 바로 내지 못했습니다. ☒☒

아! 신이 어찌하여 두 신하를 무죄라 하여 구하려 하겠습니까? 진실로 형벌을 제대로 적용하려 하면 죄

를 받는 자로 하여금 유감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논하는 자가 다만 남을 속이려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정상이 흰히 드러나 죄악이 현저한 자를 오히려 공론(公論)이라고 대우하고 사기(士氣)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며 단지 광증(狂妄)이 발동한데서 (비롯했다는 것으로) 죄안(罪案)을 삼아, 도리어 신을 모해(謀害)꾼으로 모니 또한 잘못이 아닙니까? 신은 이미 남의 배척을 받아 도리상 얼굴을 들고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여겨 부끄럽고 두려워 면직하여 주시옵기를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조용히 계실 뿐 응답을 안 하시어 신은 그대로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 이에 제 뜻을 다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오니 성찰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동인 서인의 설은 나라를 망치는 화근으로 배태된 지가 이에 10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다시 재발하였습니다. 다행히 성명하신 임금님께서 위에서 억제하시는 것에 힘입어 진정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묘년(己卯年 1519)의 사림(士林)의 화(禍)f1h를 오늘날 다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잘 처치하지 않는다면 그 화근을 제거하지 못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 있게 되어 훗날의 재앙이 오늘날의 재앙의 10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조화 진정하여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사람을 보존하는 일은 오직 오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심사숙고하시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양쪽 사람들이 한쪽은 모두 군자가 아니며, 또 한쪽은 모두 소인이 아니니 서로 조화하여 화합하자는 의논은 시폐를 고치는데 딱 들어맞는 것이어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습니다. 오늘날 관인이나 학자로서 시사(時事)를 논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사당(邪黨)이라고 하는데,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인 서인의 말이 있는 이래 봉당을 나누어 서로 대립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경박한 무리들과 간사한 무리들이 서로 응하고 시론에 부회하여 날조하고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것을 일을 삼아 터럭을 불어서 흠을 잡아 못할 일이 없으며 길가에서 근거가 없는 말을 진실과 거짓을 불문하고 모아 부연 증가시키고 그 뜻을 바꾸어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것이 마침내는 태산같이 커지게 되는데, 이를 듣는 사람이 자세히 살피지 않으니 모든 사람이 부화뇌동합니다. 이에 경박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당론(黨論)을 주창하게 하고 모사꾼들로 하여금 선봉에 서게 하여 관각(館閣)f1h과 대원(臺院)f2h에 드나드니 모든 관료가 그리하게 되어 조정이 평온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요하게 됩니다. 정론에 가탁하여 샅된 주장을 퍼뜨리며, 공(公)에 빙자하여 사(私)를 행사하며 이름을 팔아 자신의 영달을 꾀하고 관(官)을 빙자하여 자기를 살피우는 등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그쳐도 누구하나 감히 말하지 못하니 나라의 정치가 문란하고 나라의 맥이 병들었습니다.

오호라, 이것이 어찌 홀로 사람의 죄이겠습니까? 사람을 쓰는데 그 하고자 하는 대로 하니 그 형세가 부득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는 또한 사류(士類) 중에 인망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 청명사류(清明士類)로서 혹은 밖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 않으나 밖에 나가 있으므로 공론을 주장할 수가 없어 드디어 경박하고 간사한 무리로 하여금 기염을 떨쳐 그 계략과 농간을 자행하도록 하였으며, 탐관으로 녹봉에 연연하는 사람과 일을 그릇되게 만드는 무리들이 감히 그 사이에 서 있을 수 없도록 하니 아아 슬프웁니다. 비록 그럴다 하더라도 금일의 형세를 가만히 보니 공(公)과 사(私)가 서로 뒤섞여 있고, 사(邪)와 정(正)이 서로 섞여 있으며, 간사하여 나라를 망칠 사람과 식견이 바르지 못하여 오류를 면치 못할 자가 그 사이에 뒤섞여 있을 지라도, 오류로 이끄는 사람만을 날날이 견책하는 것이 불가할 뿐 아니라 관에 죄를 지은 자가 있어도 또한 이를 빨리 치죄(治罪)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조정이 모두 시론에 물들어 있어 비록 이름 있는 사류(士類)라 하더라도 이에 끼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 죄를 조금 늦추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사람마다 불안한 마음을 품고 또한 스스로 새로워질 길이 없어서 득이 되는 계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이것이 어찌 홀로 사람의 죄이겠습니까? 사람을 쓰는데 그 하고자 하는 대로 하니 그 형세가 부득불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는 또한 사류(士類) 중에 인망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 청명사류(淸明士類)로서 혹은 밖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 않으나 밖에 나가 있으므로 공론을 주장할 수가 없어 드디어 경박하고 간사한 무리로 하여금 기염을 떨쳐 그 계약과 농간을 자행하도록 하였으며, 탐관으로 녹봉에 연연하는 사람과 일을 그릇되게 만드는 무리들이 감히 그 사이에 서 있을 수 없도록 하니 아아 슬프웁니다. 비록 그럴다 하더라도 금일의 형세를 가만히 보니 공(公)과 사(私)가 서로 뒤섞여 있고, 사(邪)와 정(正)이 서로 섞여 있으며, 간사하여 나라를 망칠 사람과 식견이 바르지 못하여 오류를 면치 못할 자가 그 사이에 뒤섞여 있을 지라도, 오류로 이끄는 사람만을 낱낱이 견책하는 것이 불가할 뿐 아니라 관에 죄를 지은 자가 있어도 또한 이를 빨리 치죄(治罪)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조정이 모두 시론에 물들어 있어 비록 이름 있는 사류(士類)라 하더라도 이에 끼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 죄를 조금 늦추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 사람마다 불안한 마음을 품고 또한 스스로 새로워질 길이 없어서 득이 되는 계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묘년(辛卯年) 건저의(建儲議)때의 진술서]

<이글은 신묘년(1591) 귀양 갔을 때의1h 진술서 같아서 계미년(1583) 상소문의 아래에 붙인다.>.

모(某) 인사는 앞 임금 때의 출신으로 지금 임금 즉위 초에 시신(侍臣)의 뒤를 따라 다니다가 가장 늦게까지 경악(經幄)f2h에 출입했습니다. 노수신(盧守愼)이 교리(校理)가 되고 신(臣)이 수찬(修撰)이 되어 하루도 비현합(丕顯閣)f3h에 나와 입시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의 용안이 온화하고 순수하여 응대함이 인의지언(仁義之言)에 향응하는 것처럼 온화하여 남을 감동 시켰습니다. 강론을 마치고 나와 노수신과 함께 옥당(玉堂)f4h에서 공(公)을 대하였는데 신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감흥이 있어서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노수신도 또한 헛소리를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노인이 헛소리가 많음은 옛날부터 보통으로 있는 일이다”하니 “수찬 또한 그러한가?” 하고 서로 꺾꺾 웃었으니 성덕(聖德)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는 정묘년(丁卯年: 1567, 선조 즉위년) 겨울과 무신년(戊申年: 1568, 선조 1) 봄 사이의 일입니다. 기사년(己巳年: 1569, 선조 2) 무렵에도 또한 강관(講官)으로 드나들었는데 그때 연로한 아버지의 병이 위중해져 직사(職事)를 비우는 일이 많았는데, 요직에 있으면서 은총이 날로 새로워지고 두터워짐을 느끼지만 보답할 길이 없어 매양 노부(老父)와 노모(老母)를 앞에 두고 감읍(感泣)할 따름이었습니다. 경오년(庚午年: 1570, 선조 3)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상을 마친 후 천은이 더욱 두터워져 상복을 입고 있는 기간에 이미 직제학(直提學)에 올랐습니다. 얼마 안 있어 또 어머니 상을 당하였는데, 그때는 바야흐로 강연(講筵) 중이었는데 특별히 쌀, 콩, 기름, 꿀 등의 물건을 내려 부조해 주시어 이런 물건이 집에 쌓여서 이를 장례사에 썼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성은(聖恩)이 절실하여 감읍할 따름이었습니다.

상을 마친 후 을해년(乙亥年: 1575, 선조 8) 가을에 신병(身病)이 더욱 깊어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관직을 사직하고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인과 서인이 서로 대립하는 형세가 이미 사단(事端)의 사초가 된 것이 이 해였습니다. 신이 남으로 돌아온 사이에 일을 꾸미기 좋아하는 무리들이 날로 서로 수작하여 말하기를 “아무개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 김효원(金孝元)과 같이 조정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남쪽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다’고 하니 어찌 심하지 않은가?” 하였습니다. 신은 이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윤원형(尹元衡), 이양(李樛)f1h과도 함께 같은 조정에 있었는데 오히려 김효원과 함께 같은 조정에 있지 못하겠는가?”하고 일소에 부쳤습니다. 이 이후로 이 몸이 드디어 서인의 괴수로 추대되어 모든 형체 없고 뿌리 없는 음험(陰險)한 말들이 모두 신의 몸으로 돌아

왔습니다.

무인(戊寅 : 1578), 기묘(己卯 : 1579), 신사(辛巳 : 1581), 계미(癸未 : 1583), 갑신(甲申 : 1584), 을유(乙酉 : 1585) 년 사이에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견고해져 깨뜨려지지 않았는데 이는 오로지 이발(李潑) f2h 형제와 신(臣) 사이의 미움과 갈등이 특히 심하여 날로 신을 모함하는 것으로 일을 삼은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후 장황하게 설명하다 동인의 원망만 깊어져 신의 골수에까지 사무쳤는데 이 모두가 이발이 한 것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하 결락 된 듯)

[각주]

1) 계미년(1583)의 소초(疏草)와 신묘년(1591)의 공사(供辭)를 부기 한다 : 백세보중(百世葆重) 권 1의 내용은 대체로 송강 정철이 전라감사로 재직하던 때에 전라도를 두루 돌아보고 파악한 여러 문제들을 올린 상소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첨부했다고 하는 ‘계미년(1583)의 소초(疏草)’는 이른바 ‘계미삼찬(癸未三竄) 사건’때에 올린 상소이고, ‘신묘년(1591)의 공사(供辭)’는 이른바 ‘건저의(建儲議) 사건 때의 진술서’를 말한다

1) 우활(迂闊) : 아둔하고 어두움.

2) 선유(先儒) : 앞 시대의 스승으로 받들만한 뛰어난 유학자.

1) 수(守) : 이른바 행수법(行守法)에 의해 표기한 것으로 행수법이란 계급과 직책이 불합치할 경우에 사용하는 용법이다 계급은 높는데 낮은 급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는 행(行), 반대로 계급은 낮는데, 높은 급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는 수(守) 자를 계급과 관직 사이에 표기하는 것이다.

1) 심약(審藥) : 조선시대에 궁중에 진상할 약재를 심사 감독하기 위하여 각도에 파견된 종9품 벼슬아치.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의 의원 가운데서 차임(差任)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에 의하면 각도의 감영과 절도사가 있는 주진(主鎭)에 배치하였고, 전라도의 경우에는 제주에도 한 사람을 두었다.

2) 입번(入番) : 당번이 되어 근무처에 들어가는 일. 군사들의 경우 병종에 따라 입번의 기한 및 횟수가 모두 달랐다.

1) 차비(差備) : 특정의 임무를 맡기기 위하여 임시로 선발하는 것. 신분에 따라 차비관(差備官), 차비군(差備軍), 차비노(差備奴) 등이 있었다. 넘기면 차비(差備)에 분정하고

1) 순무(巡撫) : 각처로 순회하면서 백성을 위하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관리

1) 경성(鏡城) : 함경북도의 중앙에 위치한 군. 조선 초 만호진(萬戶鎭)이 되었다가 정종 2(1400)년 군(郡)으로 고치고 병마사(兵馬使)로 하여금 수령을 겸하게 하였다. 세종 14(1432)년에는 도호부로 승격되어 병마절제사 겸 판부사를 두게 하였고 세조13(1467)년 북절도사로 직명을 바꾸어 남.북 병사로 갈리었다. 삼아 경성(鏡城)의 예와

1) 추고(推考) : 솟장의 내용을 살피고 따지는 것.

1) 남도포진(南桃浦鎭) :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에 있었다. 현재도 성곽(城郭)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2) 권관(權管) : 조선시대 변경지방 군사조직의 최하위단위인 진보(鎭堡)에 두었던 종 9품의 수장(守將).

3) 발포진(鉢浦鎭) : 지금의 고흥군 도화면 내발리 성촌에 있었다. 현재도 일부 성벽유적이 남아 있다.

4) 통아(筒兒) : 편전(片箭)을 발사하는 기구. 편전은 화살대의 길이 1尺 2寸(약 37cm)의 작은 화살로 매우 짧기 때문에 이를 끼워 발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통(筒)이라고도 한다.

1) 방군(放軍) : 영진(營鎭)에서 부방하는 군사를 집으로 돌려보냄. 그 대가로는 베를 거두어 들이는데 이를 방군수포(放軍收布)라고 한다.

2) 총목(叢木) : 진달래나 앵두처럼 키가 작고 중심 줄기가 분명하지 않게 덩이 진 나무를 말함. 관목(灌木)이라고도 한다.

3) 절수(折受) : 국가로부터 일종의 토지소유권 증명서인 입안을 발급 받거나 전조(田租)의 수조권을 지급 받는 것.

1) 벽사찰방(碧沙察訪) : 찰방은 역(驛)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파견된 종6품 관원. 벽사역은 전라도 역로 중 지금의 장흥군 장흥읍 관덕리와 원덕리 사이에 있었던 역으로 우수영(해남)에서 좌수영(여수)에 이르는 남해 연안의 역로를 통할하였다.

1) 상상년(上上年) : 한해의 풍흉의 정도를 매길 때 최상급의 해라는 뜻.

2) 방답진(防踏鎭) : 현재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에 있었다. 1523년(중종 18) 전라좌수영의 주진(主鎭)이 되어 첨사(僉使)가 두어졌다.

1) 1식(息) : 식은 길이를 셈하는 단위로 길을 가는 사람이 한번씩 쉴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30리를 이룸.

2) 마장 : ① 10리가 미처 못되는 거리를 나타내는 말, ② 말 목장. 여기서는 ①의 뜻으로 쓰인 듯 하다.

1) 수교(受敎) : 임금의 명령을 받는 것.

2) 격군(格軍) : 배에서 노를 젓는 임무를 맡은 군사. 결군의 취음(取音).

1) 진상(進上) : 조선시대 서울과 지방의 관원이 여러 물품들을 대전(大殿)에 바치는 것. 이외에 각 전(殿)에 바치는 것은 공상(供上)이라고 함.

2) 방물(方物) : 감사나 수령이 임금에게 바치는 각 지방의 토산물.

3) 제방(除防) : 임지에서 복무하는 대신 쌀을 바치는 것, 제부방(除赴防)의 준말.

4) 구황염(救荒鹽) : 흉년에 굶주림을 구제하는데 쓰는 소금. 매년 구황에 쓰인 소금을 제외하곤 모두 곡물로 바쳐 군자(軍資)에 충당하였음.

5) 제주 3읍 :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을 말함.

1) 대립(代立) : 군역이나 부역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입역(立役)시키는 것.

2) 비거도선(鼻巨舳船) : 거룻배와 같게 만든 작고 빠른 병선.

3) 을묘왜변(乙卯倭變) : 1555(명종 10)년에 왜구가 전라도 강진.해남.영암.진도 일대에 침구해 노략질을 자행한 사건.

4) 초둔(草苳) : 부들이나 띠 같은 풀로 엮어서 비나 햇볕을 가리고 덮는 거적 같은 것. 동우리라고도 함.

5) 삼갑삭(三甲索) : 세겹 밧줄.

6) 조삭(條索) : 정확하지는 않으나 문의(文意)로 보아 한 겹 밧줄을 의미하는 듯싶다.

7) 사복시(司僕寺) : 수레와 말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청.

8) 작지(作紙) : 세(稅)의 한가지로 관부에서 문서를 만드는데 소용되는 종이 값으로 거뒀어지는 것.

9) 삼정가(三丁價) : ① 세 사람의 장정. ② 상자를 넣기 위해 노끈으로 망태처럼 만든 물건, 또는 상자를 싸기 위해 노끈으로 엮어 만든 보. 여기서는 ②의 뜻으로 쓰인 것 같다.

1) 등패(等牌) : 군사 편제상 한 대(隊)를 거느리는 우두머리나 역사(役事)를 할 때의 일꾼 중에서 영솔의 책임을 맡은 사람.

2) 가장(假將) : 장수의 결원이 있을 때 정식임명으로 보충하기 전까지 그 임무를 맡아보게 한 임시 장수.

1) 호수(戶首) : 군역이나 공부(貢賦)납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민호의 대표자. 군역의 경우엔 직접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을 이른다.

2) 보인(保人) : 군역의 의무를 직접 복무하는 호수(戶首)의 경제적 보조를 위해 정군(正軍)에 배정되어

베나 무명을 납부하던 자. 조선초기에는 봉족(奉足)이라 하였다.

3) 번차도목(番次都目) : 번차(番次)는 번을 드는 차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상태를 상번(上番), 근무에서 해제되어 다음 근무기간까지 대기하는 상태를 하번(下番)이라 한다. 도목(都目)은 도목정사(都目政事)의 준말로 관원의 인사이동을 하는 것. 보통 6월과 12월에 행한다.

4) 을묘년 : 앞의 어휘 33번의 설명 참조 바람.

1) 이진포(梨津浦) : 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이진부락에 있었음

1) 어란포(於蘭浦) : 현재의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에 있었음

1) 영문(營門) : 감사(監司)나 병사(兵使).수사(水使)가 주재하는 관아로 감영, 병영, 수영을 이른다.

2) 방군수포(放軍受布) : 앞의 어휘 16번 참조 바람.

3) 포작간(鮑作干) : 바닷물 속에 들어가 조개, 미역 따위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국가의 각종제사에 쓰는 어포(魚鮑)를 떠서 소금에 말려 진상하는 신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격군으로 동원되기도 하였다.

4) 적간(摘奸) : 관리의 부정부패를 조사 적발 하는 것.

1) 지갑(紙甲) : 갑옷의 하나로 종이를 여러 겹 접어 6cm 평방의 미늘을 만들고 이것들을 녹피(鹿皮)로 엮어 짜서 검은 칠을 한 것임.

1) 난리 : 1555(명종 10)년에 왜구가 전라도 강진.해남.영암.진도 일대에 침구해 노략질을 자행한 사건.

2) 엄심(掩心) : 가슴을 가리는 갑옷.

3) 가리포(加里浦) : 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소재.

1) 황장목(黃腸木) : 재관(梓棺: 임금용의 관)을 만드는데 쓰는 질 좋은 소나무.

2) 대견두(大犬頭) : 현재는 대구두(大拘頭)라고 쓰며 큰개머리라고 한다. 현재 완도읍 군내리 남망봉 동남쪽에 있다.

3) 마장 : ① 10리가 미처 못되는 거리를 나타내는 말, ② 말 목장. 여기서는 ①의 뜻으로 쓰인 듯 하다.

4) 지력산(地歷山) : 진도읍 지산면 와우리와 보안리에 걸쳐 있는 산. 목장이 있었음.

5) 천순(天順) 계미년(癸未年) : 천순(天順)은 명나라 영종(英宗)의 연호, 계미년은 1463(세조 9년)임.

6) 홍치(弘治) : 홍치(弘治)는 명나라 효종(孝宗)의 연호, 병진년(丙辰年)은 1496(연산군 2)년임.

7) 가정(嘉靖) : 가정(嘉靖)은 명나라 世宗의 연호, 을유년(乙酉年)은 1525(중종 4)년임.

8) 점마(點馬) : ① 마필을 점고하는 것, ② 지방의 관마(官馬)를 점고하기 위해 파견된 임시벼슬, 또는 벼슬아치인 점마별감(點馬別監).점마사(點馬使)를 줄인 말. 여기서는 ②의 뜻으로 쓰임.

1) 언관(言官) : 시정의 득실과 관원의 규찰을 담당하는 관부와 관원. 조선시대는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 등이 해당된다.

1) 조군(漕軍) : 고려.조선시대 조운선(漕運船)에 승선하여 조운 활동에 종사하던 선원. 조졸(漕卒)이라고 고도 하며 사공과 격군(格軍)으로 구분되었음. 신량역천(身良役賤)의 계층으로 세습직.

2) 법성창(法聖倉) : 현재의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에 있었던 조창.

3) 주인(主人) : 경주인(京主人) 또는 영주인(營主人). 고려.조선시대 지방관청과 중앙의 연락사무를 맡아보기 위해 지방으로부터 파견된 향리. 이들은 해당지역의 공물(貢物), 입역(立役) 등에 관한 사무를 책임졌다.

4) 색전(色典) : 조창에 속하여 세곡을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하급관리

5) 해운판관(海運判官) : 조선시대 조운(漕運)을 총괄하던 종5품직.

1) 갑합(勘合) : 조선시대에 발송할 공문의 끝에 원부를 대고 그 위에 찍던 계인(契印)으로 연월일과 자호(字號)를 새겼음. 서로 대조하여 맞춰본다는 뜻으로도 쓰임.

2) 가조군(加漕軍) : 원래 조군 수에 더 차정한 수효라는 뜻인 듯 하다.

3) 임군(賃軍) : 조선초기에 조운은 병선(兵船)과 선군(船軍)을 활용하였는데(관선조운제), 그 역을 부담한 선군의 피역이 만연하고 관선(官船)건조의 어려움이 잇따라 조운의 일부를 사선을 임대하여 하는 체제로 점차 이행하였다. 이때 임대된 사선을 임사선 또는 임선(賃船)이라고 하고, 그 선군을 임군(賃軍)이라 한다.

4) 영선(領船) : 영선은 조운선에서 ‘배를 이끄는 직임’이라는 의미와 ‘조군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다. 그 편제는 매 1척마다 영선(領船) 1인이, 10척에는 통령(統領) 1인, 30척에는 천호(千戶) 1인을 두었고, 그 위에는 해당지역의 조운선을 통틀어 관리하는 만호를 두었다 한다.(『경국대전(經國大典)』 병전(兵典), 번차도목(番次都目) 조군조(漕軍條)). 그러므로 이 글에서의 ‘천호영선(千戶領船)’의 해석은 ‘천호와 영선’ 또는 ‘천호와 영선공리(領船貢吏)’일 수도 있고 그냥 ‘천호영선’ 일수도 있다.

1) 구황(求荒) : 가뭄이나 흉수 등의 재앙이 들 때 이를 구호하는 것.

1) 모곡(耗穀) : 세곡이나 환곡, 군자곡 따위를 내주고 받을 때나 창고에 보관 할 때 자연적으로 축나는 것 모홀(耗欠) 모축(耗縮)이라고도 함. 이처럼 축나는 것에 대비하여 더 거두는 것 모미(耗米), 환모(還耗), 작서미(雀鼠米) 등으로도 쓰임.

1) 가격군(加格軍) : 원래의 수효에 더하여 충정된 격군이라는 뜻인 듯.

2) 임사선(賃私船) : 앞의 임군(賃軍)에 관한 어휘 79번의 설명 참조 바람.

1) 진상물품 중 도련지(擣練紙) : 다듬이 돌에 다듬어서 네 귀퉁이를 가지런하게 자른 종이류를 두루 일컫는 말. 종류는 품질에 따라 다름. 도련지(刀鍊紙)라고도 씀.

2) 장지(壯紙) : 두껍고 질기며 품질이 썩 좋은 종이

1) 봉족 : 군역의 의무를 직접 복무하는 호수(戶首)의 경제적 보조를 위해 정군(正軍)에 배정되어 베나 무명을 납부하던 자. 조선초기에는 봉족(奉足)이라 하였다.

1) 재궁(梓宮) : 임금의 관(棺)을 일컫는 말.

2) 봉심(奉審) : 왕명에 따라 능(陵)이나 묘(墓)를 살피는 일.

1) 계미삼찬사건(癸未三竄) : 1583년(계미년, 선조 16)에 동인 계열의 박근원(朴謹元).송응개(宋應澂).허봉(許篈) 등 세 사람이 이이(李珥)를 몰아내려다 모두 유배된 사건. 이이는 동서분당 후 점차 서인계로 기울었는데, 그가 병조판서로 재임 시 몇 가지 독자적인 시책을 편 일이 있었다. 이에 대사간 송응개 등이 이이가 병권을 마음대로 하고 임금을 업신여기는 간신이라고 비난하는 소를 올렸는데, 이에 조정 대신과 지방 유생들이 서로 파를 갈라 상대방을 비난, 배척하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결국, 죄를 밝혀 시비를 정하자는 서인 정철(鄭澈)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들을 평안도와 함경도로 귀양 보내었다.

2) 기옹(畸翁) : 정홍명(鄭弘溟)을 말함. 정철의 넷째 아들. 1582(선조 15)~1650(효종 1). 호는 기암(畸庵),또는 삼치(三痴)라고 했는데, 기옹(畸翁)으로도 불린다. 1616년에 증광문과에 급제한 후 검열, 지평, 부제학, 수원부사, 대제학 등의 벼슬을 역임하였다. 저서에기암집(畸庵集), 기옹만필(畸翁漫筆) 등이 있다.

1) 화(禍) : 1519년(중종 14) 11월에 일어난 기묘사화(己卯士禍)를 말함. 당시 신진 사림이던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식(金湜).기준(奇遵).한충(韓忠).김구(金絿).박세희(朴世熹).박훈(朴薰).홍언필

(洪彦弼).이자(李穉).유인숙(柳仁淑) 등이 훈구세력과 대립하다가 반정공신위훈삭제사건(反正功臣僞勳削除事件)을 계기로 하여 남곤(南袞).심정(沈貞).홍경주(洪景舟) 등의 훈구 재상에 의해 죽음을 당하거나, 귀양, 파직 당하는 등의 화를 입은 사건.

1) 관각(館閣) : 주로 문한(文翰)에 관한 일을 하는 관청. 조선 시대에는 경연청(經筵廳).춘추관(春秋館).승문원(承文院).성균관(成均館).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규장각(奎章閣)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2) 대원(臺院) : 임금에 대한 간쟁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간원의 별칭임.

1) 신묘년(1591) 귀양 갔을 때 : 신묘년(1591년, 선조 24)에 정철이 건저(建儲)문제(세자 책봉에 관한 의견)를 제기했다가 실각하고 유배를 가게 된 사건. 국왕인 선조에게는 적자(嫡子)가 없었는데, 당시 좌의정이던 정철은 우의정 유성룡(柳成龍)등과 상의하고 선조에게 건저할 것을 주청 하였는데, 영의정인 이산해(李山海)는 정철이 광해군을 왕세자로 올리고 인빈 김씨와 그 아들인 신성군을 죽이려 한다는 뜻으로 인빈 김씨를 사주하였다. 이를 전해들은 선조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대노하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철은 삭탈관직되어 유배를 당하게 되었고. 서인의 주요 인사는 대부분 숙청되고 조정은 완전히 동인이 장악하게 되었다

2) 경약(經幄) : 일반적으로는 경연(經筵)이라고 하는데, 신하가 국왕에게 유학의 경서나 역사서를 강론하는 일. 또는 그를 행하는 자리라는 뜻임.

3) 하루도 비현합(丕顯閣) : 경복궁의 사정전(思政殿)에 딸린 부속 건물의 이름.

4) 옥당(玉堂) : 조선시대 홍문관(弘文館)을 달리 이르는 말. 또는 홍문관의 부제학(副提學) 이하 교리(校理).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부수찬(副修撰) 등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1) 이양(李樛) : 1520(중종 15)~1571(선조 4). 명종때의 권신으로 윤원형의 전횡(傳橫)을 견제하려는 명종에 의해 중용되었으나, 왕의 총애를 받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모두 추방하고 아부하는 자들을 중용하여 뇌물을 받는 등으로 전횡을 일삼았다. 언관의 계속적인 탄핵으로 마침내 실각되어 강계로 유배갔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2) 이발(李潑) : 1544(중종 39)~1592(선조 22). 선조대 동인의 거두로 정철과 대립하였고, 정철의 처벌문제에 대해서는 강경론을 주도하였다. 1589년의 기축옥사(己丑獄事: 정여립(鄭汝立)의 모역사건)가 일어나자 이에 연루되어 그의 형제인 이길(李洁).이급(李汲) 등 모두가 처형당하였다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